2010

일시 : 2010. 6. 30(수) 14:00~17:00 / 장소 : 대한건축사협회 대강당

기회의 한국건축 토론회

주최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주관 ‖ 한국건축단체연합
(대한건축사협회, 대한건축학회, 한국건축가협회)

대 통 령 소 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Presidential Commission on Architecture Policy

▣ 행사개요

◦ **행사명** : 기회의 한국건축 토론회

◦ **일　시** : 2010년 6월 30일(수) 14:00 ~ 17:00

◦ **장　소** : 대한건축사협회 대강당(1층)

◦ **주　최**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 **주　관** : FIKA(한국건축단체연합 :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축가협회, 대한건축학회)

◦ **프로그램**

사회 : 제해성(한국건축단체연합 정책위원장)

14:00	국민의례
14:00 ~ 14:05	개회사(정명원 국가건축정책위원장)
14:05 ~ 14:15	인사말(최영집 한국건축단체연합 회장)
14:15 ~ 15:40	**<1부> 패널 토론** 좌　장 : 김인철(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 토론자 : 김일환(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장) 이건기(서울시 신주택정책 기획단장) 이광만(한국건축가협회 수석부회장) 박경립(대한건축학회 부회장) 전영철(대한건축사협회 상근이사)
15:40 ~ 15:50	Break Time
15:50 ~ 17:00	**<2부> 플로어 자유토론**

목 차

1 개회사

정명원(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

2 인사말

왜 국가건축정책인가?

최영집(FIKA 회장)

3 발제

기회의 한국건축

김인철(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

4 주제발표1

건축정책의 현황과 문제제기

김일환(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장)

5 주제발표2

서울의 건축정책 과제 및 발전방향

이건기(서울시 신주택정책기획단장)

6 주제발표3

건축품격향상과 건축문화진흥

이광만(한국건축가협회 수석부회장)

7 주제발표4

복합성과 네트워킹

박경립(대한건축학회 지회담당부회장)

8 주제발표5

건축정책 제안

전영철(대한건축사협회 상근이사)

"기회의 한국건축" 정책토론회 개회사

정 명 원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 정명원 입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도 이번 우리 위원회의 정책토론회에 참석해주신 한국건축단체연합(FIKA)의 회원여러분,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축행정을 맡고 계시는 건축직 전문가 여러분, 그리고 건축 각계의 전문가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국토환경 디자인 개선 및 건축문화 진흥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국가의 품격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건축기본법에 의해 2008년 12월에 출범한 대통령소속 위원회입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속가능한 新주거문화 창출을 위한 뉴하우징 운동, 국격향상을 위한 신한옥 플랜, 공공건축 효율화 및 디자인 향상과 건축문화진흥을 위한 기반구축 등 다양한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해왔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건축·도시분야의 최초 국가계획인 제1차 건축정책기본계획을 심의 확정하여 건축정책의 중·장기적 비전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책업무를 추진하는 동안 과제별로 자문단을 운영하기도 하고 유관기관과의 간담회나 토론회를 열어 각계 건축인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나름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현장에서 있는 건축인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래된 그림 하나 보여드릴까요?
1840년에 미국의 Thomas Cole이라는 화가가 The Architect's Dream이라는 그림을 전시했습니다.
비평 중의 하나는 too full of poetry였다고 합니다.

이 19세기의 건축가는 고전적인 기둥 꼭대기에 앉아 작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제가 보기엔 이집트, 그리스, 로마, 고딕, 등 화려한 과거의 건축역사를 연상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만...

이제 200년이 흘러간 21세기의 한국 건축인들은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들을 머리속에 담아두시지만 마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풀어주십시오.

오늘 건축인 여러분들께서 제안하는 소중한 의견들 하나하나에 귀를 열고 마음으로 듣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정책 수립 시 오늘 이 자리에서 해주신 말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적극 반영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행사가 일회적이고 형식적인 토론회에 그치지 않고 보다 나은 국가건축정책 수립을 위한 새로운 소통의 장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끝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번 토론회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국가건축정책인가?

한국건축단체연합(FIKA) 대표회장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최 영 집

건축기본법이 2년 전에 공포되었고 그에 따라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발족되었다. 문화의 세기를 맞아 건축의 가치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이 시대에 그 중심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건축계에서 함께 오랫동안 노력해 온 결실이다. 이제 2년차로 접어들었으니 그 근본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고 궤도를 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왜 유별나게 유독 건축만 기본법이니 국가건축정책이니 하고 특별화 시키느냐고 다른 분야에서 시기나 질투를 할지는 모르지만 그건 건축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데서 오는 잘못이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은 건축은 그 시대 문화의 총체이며 역사의 유산이다. 다시 말하면 한 시대를 대변하는 국민의 총체적 능력과 의지, 철학과 생활이 만들어내는 진실한 드라마이며 후손에게 남겨줄 결실이기 때문이다. 건축이 산업이며 기술이며 하는 것은 부수적인 문제이며 건축 관련 분야들은 건축의 질을 높여주기 위해 필요불가결한 요소들일 뿐이다. 그런 개념의 이해가 우선적으로 전제되지 않는다면 기본법도 의미가 없고 위원회 존재도 필요 없다.

건축의 개념을 근본적으로 재정립하는 일이 시급하다. 건축은 문화적 소프트웨어이자 유형적으로 빚어낸 인문학이다. 그 점이 무엇보다 전제되어야 한다. 건설이라는 하드웨어가 아니고 산업이라는 소모품이 아닌 문화적 상품이며 영속성을 지향해야 하는, 정부와 사회가 자부심을 심어주며 인정 보호 육성해야 되는 존중받아야 할 종합가치이기 때문이다. 그럴 필요를 못 느낀다면 굳이 법과 위원회까지 만들 필요가 있겠는가. 기존 조직 내 에서도 충분히 소화 시킬 수 있을 것이다.

건축은 자연과 생활 속에서 인간의 생각과 행동을 담아내는 소중한 그릇이다. 자연과 더불어 이루어내는 경관이며 형태이며 공간이다. 그러므로 건축은 물질적인 철학이다.

건축을 하는 사람은 건축을 있게 하는 사람이며 건축을 생각하는 사람이며 건축 속에 생활하는 사람이며 건축을 즐기는 사람이며 건축을 남기는 사람이다. 건축을 만드는 사람은 건축을 기획하고 창작하는 사람이며 현실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모든 정보와 기술을 동원하여 시대에 맞게 생활에 맞게 경제와 산업에 맞게 형상화 시키는 모든 영역의 관계자이다. 모든 분야가 다 중요하다지만 그 중에서도 핵심은 무엇보다도 먼저 머리와 가슴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이성과 감성으로 정보와 기술을 총괄하며 건축을 생각하고 기획하며 구상하며 구현시키며 실체를 현실화 시킬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내는 사람이다. 그런 능력을 특별히 갖춘 사람을 건축가(Architect)라 하고 국가가 그 자격을 인정해 준 사람을 건축사(Licensed Architect)라 한다.

건축의 중심적 개념을 다시 한번 쉽게 정리해 본다면 건축을 있을 수 있게 하는 모든 행위의 형이상학적 중심 가치이자 형상화 되어지는 모든 단계의 상위 영역이다. 그래서 건설의 일부로 폄하되기를 거부하며 건축이 바르게 건설되기를 추구하는 것이다.

건축을 넓게 생각한다면 광의의 개념은 건축이라는 생물이다. 기획 제작관리 즉 잉태부터 소멸 될 때까지의 라이프 사이클 모든 단계가 전부 건축의 범위이다. 생활과 함께하고 역사와 함께하는 인간이 만든 자연의 일부가 건축이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한 특권이 건축이다. 그러므로 건축을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은 누구나 건축가라고도 할 수 있다. 공공건축을 있게 하는 국가공무원, 사업적 상업적 목적으로 건축을 있게 하는 기업가 모두가 건축가가 될 수 있고 또 건축가는 당연히 그 역할을 능히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건축의 중심에 기획자이자 작가이자 감독이자 관리자인 건축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대적으로 당연한 논리이다. 이제는 장인의 건축시대가 아니다. 정책과 기획, 제작, 감독, 관리의 건축시대이다. 그런 철학의 바탕위에 건축기본법이 있는 것이고 건축정책위원회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건축의 범위를 넓게 시공 제작 단계까지로 가지고 간다면 건축정책의 핵심을 흐리게 할 수가 있다. 중심을 정확하게 다루는 것이 정책이다.

광의의 건축을 수평적·수직적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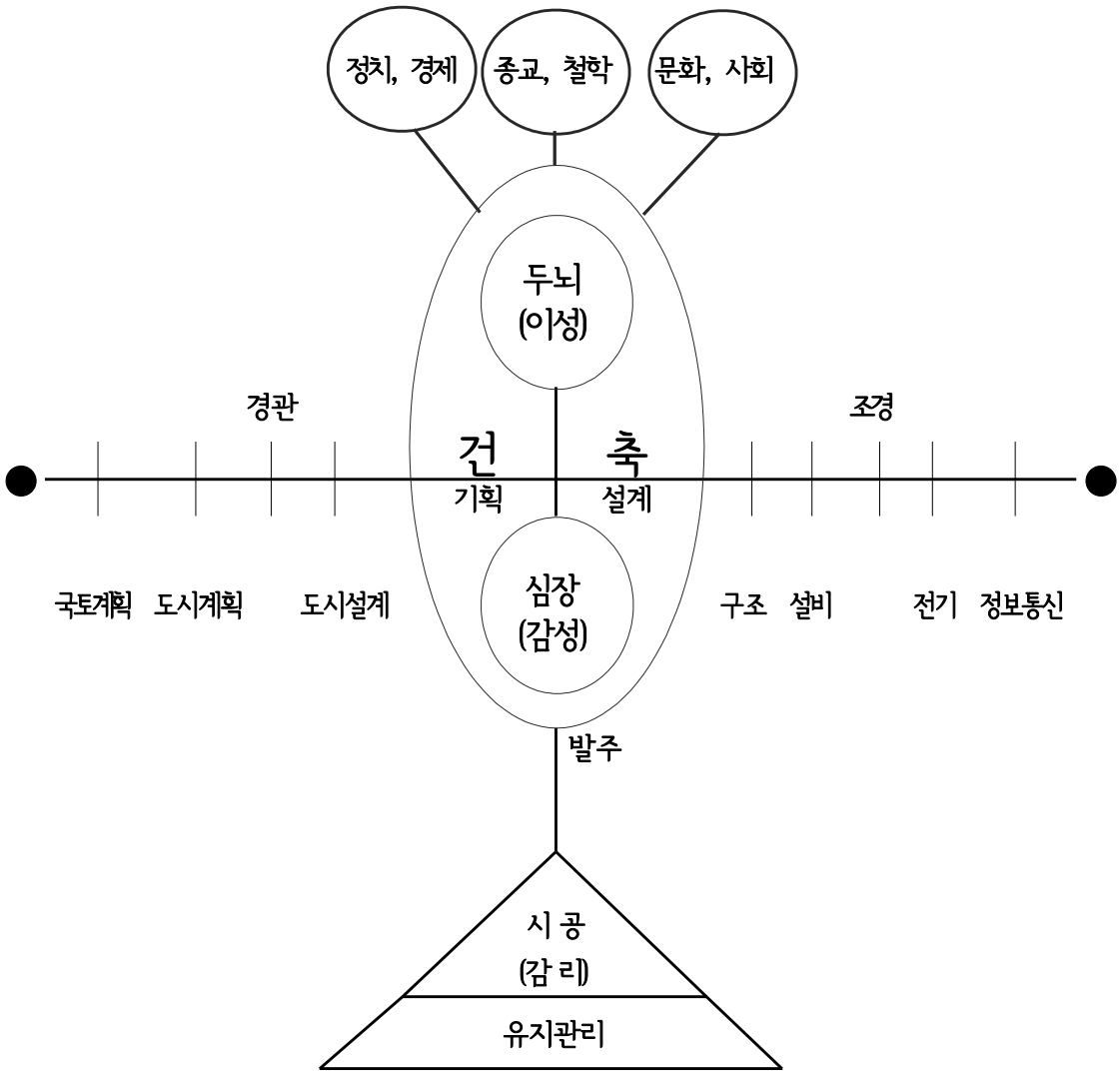

■ 중심적 건축개념과 포괄적 건축범위의 다이어그램

왜 국가건축정책이어야 하고 건축가가 중심에 있어야 하는지 설명이 필요 없을 것이다. 모든 관련계획은 건축을 있게 하기에 필요한 것이고 모든 전문 기술 분야는 건축을 만들게 하는데 필요한 영역들임을 자각할 필요가 있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일상 조직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분야를 아우르며 건축의 두뇌와 심장을 바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대통령소속으로 만든 위원회가 되어야 한다. 이름이 왜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인지 다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보자. 관련 영역들이 무엇을 위해 본연의 역할이 필요할 것인지 어떤 개념으로 건축을 위해 자신의 역할을 해야 할 것인지를 고민해 나가도록 중심 동력을 가동시키는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되어 주기를 바랄 뿐이다.

건축의 수평적·수직적 모든 분야가 협동하고 연합, 통합, 융합하여 건축의 더 큰 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어서 대한민국이 대건축문화민국으로 세계에 우뚝 설 수 있기를 기원한다. 끝.

기회의 한국건축

좌장 金 仁 喆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
중앙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이 땅에 현대건축이 시작된 지 반세기가 지났습니다. 그동안 치러낸 한국건축의 과정은 우여곡절과 시행착오의 연속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나 척박한 문화적 환경과 빈약한 사회적 토양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룬 성과는 이제 세계의 주목을 받는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한국건축은 성장을 위한 수습과정에서 벗어나 정체성을 갖춘 건축문화를 창조해야하는 성숙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건축문화가 도약하기에 적합한 바탕이 준비되어있는가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를 가지기는 아직 어렵습니다. 지난 시대에 적용되었던 제도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구태의연한 관행들이 여전히 유효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새로움보다 익숙함을 요구하고, 도전하기보다 안주하기를 택하는 사회적 분위기도 변화하지 않고 있습니다.

건축은 건축의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주변 조건의 횡적인 연대와 교육제도, 설계와 기술, 시공과 재료, 유지관리 등 내부 조건의 종적인 관계에 의해 생산되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축을 문화의 총체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동안 이룬 우리의 건축과 도시가 과연 문화적인 풍경을 이루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하려는 것은 건축에 관련되는 모든 항목이 아니라 건축을 결정하는 설계에 관한 것입니다. 정책과 제도, 기획과 집행, 발주와 수주, 설계와 감리 등 설계에 관련된 각각의 입장을 짚어 문제를 찾고 대안을 모색하려고 합니다. 통제를 위한 획일이 아니라 자율과 복합이 가능하도록 시대의 상황에 부응하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모든 논의는 우리의 현실을 확인하고 그로부터 진화를 도모하는 것에 맞추어지기를 바랍니다.

세계는 다양성의 가치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문화의 표상으

로서 건축의 가치를 제고하고 향유할 수 있는 방안이 제기되기를 기대 합니다. 건축기본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법의 취지가 왜곡되거나 또 그 집행이 타성으로 흐른다면 한국건축이 도약할 기회는 만들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기회는 스스로 만드는 것이며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존재이유 또한 그 해결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더라도 이곳에서 제기된 의견은 앞으로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과제가 될 것입니다.

건축정책의 현황과 문제제기

국토해양부
김일환

< 목 차 >

• 건축설계 산업의 규모

• 국내 건축설계사무소 실태

• 문제제기

▫ 축소되는 건축시장
▫ 부적절한 배출인원
▫ 자구적 노력 부족

1. 건축설계 산업분석

건축설계·엔지니어링 산업 매출액 규모 9.3조원

- 2005년 9.3조원(2001년 대비 59% 증가)
- 이 중 건축설계 산업은 약 **4조원**(2001년 대비 48% 증가)

건축설계엔지니어링 산업규모 및 증감률(2005) 건축설계엔지니어링 산업규모 및 증감률(2005)

매출액(백만원, %)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 서비스업	2001	5,833,172
	2005	9,298,148
	증감률	59
건축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	2001	2,708,090
	2005	4,016,407
	증감률	48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2001	3,125,082
	2005	5,281,741
	증감률	69

※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 서비스업은' '건축설계·엔지니어링 산업' 을 지칭함.
※ '건축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 과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은 각각 '건축설계 산업' 과 '엔지니어링 산업' 을 지칭함.

1. 건축설계 산업분석

종사자 규모에 따른 매출액 현황

- 전체 4조원 가운데 1.2조 원(30.5%)의 매출을 100인 이상 대형사무소에서 차지
- 전체 사업체 수의 **1.3%에 매출 집중**

건축설계엔지니어링 산업규모 및 증감률(2005)

종사자 규모별 매출액 (백만원)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건축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소계	9,298,148	4,016,407	5,281,741
1명	65,180	45,424	19,756
2-4명	662,885	482,120	180,765
5-9명	1,028,110	593,167	434,943
10-19명	1,216,409	605,107	611,302
20-49명	1,652,764	622,597	1,030,167
50-99명	1,067,352	443,095	624,257
100-199명	1,117,904	470,084	647,820
200-299명	745,329	332,506	412,823
300이상	1,742,215	422,307	1,319,908

출 처 : 통계청, 산업 세세분류 및 종사자 규모별 총괄(2005)
※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 서비스업' 은 '건축설계·엔지니어링 산업' 을 지칭함.
※ '건축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 과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은 각각 '건축설계 산업' 과 '엔지니어링 산업' 을 지칭함.

1. 건축설계 산업분석

건축설계산업 업체당 매출액 5.3억

- 엔지니어링 산업 업체당 매출액 15억 : 건축설계산업의 2.8배

			사업체수 (개, %)	종사자수 (명, %)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 서비스업		2001	8,619	91,185
		2005	10,987	118,680
		증감률	27	30
	건축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	2001	6,288	48,384
		2005	7,463	53,587
		증감률	19	11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2001	6,175	47,266
		2005	7,222	50,951
		증감률	17	8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	2001	113	1,118
		2005	241	2,636
		증감률	113 %	136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2001	2,331	42,801
		2005	3,524	65,093
		증감률	51	52
	건물 및 토목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2001	1,078	25,645
		2005	1,726	41,091
		증감률	60	60
	환경상담 및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2001	125	1,582
		2005	234	2,434
		증감률	87	54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2001	1,128	15,574
		2005	1,564	24,663
		증감률	39	58

※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 서비스업'은 '건축설계·엔지니어링 산업'을 지칭함.
※ '건축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과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은 각각 '건축설계 산업'과 '엔지니어링 산업'을 지칭함.

1. 건축설계 산업분석

생산관련 현황

- 건축설계 산업 1인당 매출액 7,500만원
- 엔지니어링 산업 1인당 매출액 8,100만원

건축설계 · 엔지니어링 및 관련 서비스업

		평균 임금(백만원)	일인당 매출액 (백만원)	매출액 대비 인건비비율(%)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 서비스업		25	78	32
	건축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	23	75	30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22	74	30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	28	89	31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26	81	33
	건물 및 토목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25	78	32
	환경상담 및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25	91	28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26	76	34

※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 서비스업'은 '건축설계·엔지니어링 산업'을 지칭함.
※ '건축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과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은 각각 '건축설계 산업'과 '엔지니어링 산업'을 지칭함.

1. 건축설계 산업분석

미국 건축설계 산업 현황

- 건축설계 산업 사업체 수 32,622개, 종사자 수 265,477명(2008년 기준)
- 2005년이후 매년 1.1~1.8% 유지, 매출액은 매년 7%이상 성장 기록
- **사업체수는** 한국보다 **6.4배, 종사자수 5.2배, 매출액 12.2배**에 해당
- 사업체 1곳당 매출 규모는 94만 달러로 한국보다 200%, 종사자 1인당 매출규모도 240% 높은 수준

미국, 건축설계 산업 동향

구 분	연 도				연도별 변화 비율		
	2005	2006	2007	2008	05-06	06-07	07-08
사업체 (개)	31,349	31,701	32,059	32,622	1.1%	1.1%	1.8%
매출액(백만$)	24,393	26,389	28,488	30,658	8.2%	8.0%	7.6%
종사자 (인)	253,363	257,646	260,769	265,477	1.7%	1.2%	1.8%

1. 건축설계 산업분석

일본 건축설계 산업 현황

- 사업체수 **2.3배** 와 종사자 수는 한국보다 **2.3배**, 매출액 **4.3**배
- 사업체 1곳당 매출 규모는 175만 달러로 한국보다 **1.8배** 높은수준

한국과 일본의 건축설계 및 엔지니어링 산업 비교

구 분	2005		2006		2007		2008	
	일본	한국	일본	한국	일본	한국	일본	한국
사업체 (개)	41,073	17,331	40,484	17,202	40,367	17,148	40,311	17,160
종사자 (인)	556,827	234,944	545,936	231,976	543,791	231,006	542,359	230,874
매출액($M)	60,295	13,630	63,153	14,426	65,851	15,321	70,392	16,491
업체당 매출액($M)	1.47	0.79	1.56	0.84	1.63	0.89	1.75	0.96
종사자당 매출액($M)	0.11	0.06	0.12	0.06	0.12	0.07	0.13	0.07

2. 국내 설계 사무소 실태

건축설계·엔지니어링 산업 종사자 현황

- 건축설계 산업 중, **10인 미만 사업체 비율은 87%,** 엔지니어링 산업은 **63%**
- 건축설계 산업의 **10인 미만 규모 소기업 수는 엔지니어링 산업(2,302개)에 비해 2.8배 높게** 나타남

건축설계 산업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 수(2005)



2. 국내 설계 사무소 실태

프로젝트 수주 현황

- **계약건수'5~9건' (30.7%)**
- 주거건축보다는 비주거 건축물 프로젝트 비율이 높음

우리나라 2008년 계약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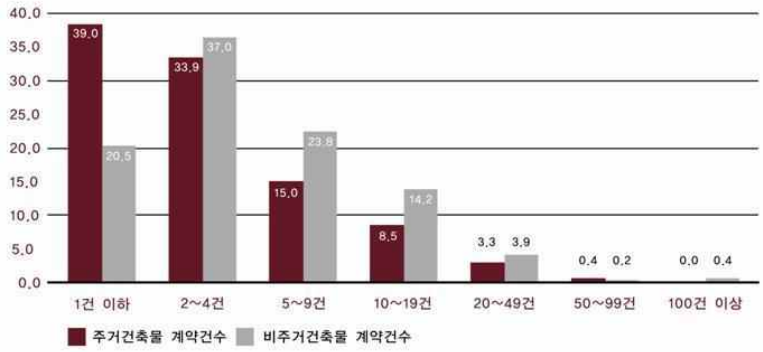

2. 국내 설계 사무소 실태

보수와 외주의 비율

- 평균연봉 2,000~3,000만원(46.1%)
- 외주비율 20~30% 이상(37.2%), **대형사무소의 경우 외주비율 40% 이상(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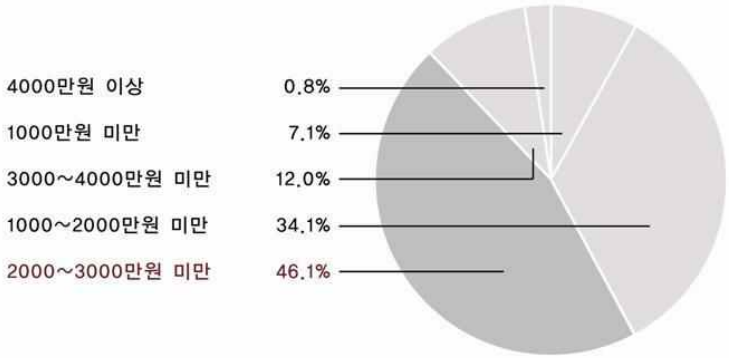

3. 문제제기

가. 시장축소

(단위 : 조원, ( )는 전년대비증가율,%)

□ GDP 대비 건축분야 비중의 증감

구분		'04	'05	'06	'07	'08	'09
GDP		832.3	865.2	910.0	956.5	978.5	980.4
		(4.6)	(4.0)	(5.2)	(5.1)	(2.3)	(0.2)
건축	주거용	45.0	46.1	45.0	43.7	40.2	37.6
		(3.6)	(2.4)	(△2.4)	(△3.0)	(△7.8)	(△6.5)
	비주거용	52.1	49.7	51.5	52.8	51.9	52.9
		(1.3)	(△4.8)	(3.7)	(2.6)	(△1.8)	(1.9)
	합계	97.2	95.8	96.5	96.5	92.1	90.4
		(2.4)	(△1.4)	(0.8)	(0.0)	(△4.6)	(△1.8)
건축/GDP		11.7%	11.1%	10.6%	10.1%	9.4%	9.2%
토목		58.8	59.6	59.7	61.9	61.8	70.0
건설		(△0.3)	(1.4)	(0.1)	(3.8)	(△0.2)	(13.3)
건설투자/GDP		18.7	18.0	17.2	16.6	15.7	16.4

□ 건축허가.신고 변동 현황

(단위 : 건수)

구분	1991년	1995년	2000년	2004년	2005년	2009년
허가	14,969	18,857	53,180	54,192	48,998	68,597
신고	1,093	3,916	28,428	63,214	57,736	118,403
합계	16,062	22,773	81,608	117,406	106,734	187,000

나. 부적절한 배출인원

□ 건축.조경.도시분야 졸업자 배출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2009	2008	2007	2006	2005
건축학과	계	64,481	11,452	12,226	12,760	13,959	14,084
	대학졸업자	32,424	6,002	6,313	6,550	6,528	7,031
	대학원 〃	3,217	876	817	729	795	-
	전문대 〃	28,840	4,574	5,096	5,481	6,636	7,053
조경학과	계	4,507	923	914	800	1,031	839
	대학졸업자	2,623	577	559	451	525	511
	대학원 〃	303	76	85	75	67	-
	전문대 〃	1,581	270	270	274	439	328
도시공학과	계	4,274	952	923	888	765	746
	대학졸업자	3,654	761	735	757	655	746
	대학원 〃	620	191	188	131	110	-
	전문대 〃	-	-	-	-	-	-

* 자료출처 : 한국교육개발원 국가교육통계정보센터

□ 국내 건축사 배출 현황

(2009. 12. 31. 현재)

년도별	응시자(명)	합격자(명)	합격률(%)		년도별	응시자(명)	합격자(명)	합격률(%)
계	145,118	17,041	11.7					
79 이전	13,719	1,719(1급) 1,820(2급)	13.5		95	6,441	1,387	21.5
80	1,642	320	19.5		00	5,033	919	18.3
85	2,675	215	8.0		05	5,560	193	3.5
90	4,432	316	7.1		09	5,633	454	8.1

□ 미국의 건축사시험 합격률

(단위 : %)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필기	81.8	81.8	82.5	81.2	74.5	74.8
실기	70.3	64.3	67.6	67.7	66.0	67.3

-자격시험 필기시험의 합격률은 80%, 건축설계의 합격률도 68%정도
- 최종 합격자 수는 연간 약 2,000명 정도

□ 영국의 경우

- Part 1, Part 2, Part 3의 합격률은 80% 이상
- Part 3 통과해 등록건축사 자격을 받는 사람은 매년 700명 정도

다. 자구적 노력부족

□ 한정된 제공 서비스

- 우리나라 건축사무소의 경우 **설계(90.0%)중심**, 감리(73.8%), 인테리어(25.8%)

업체 관여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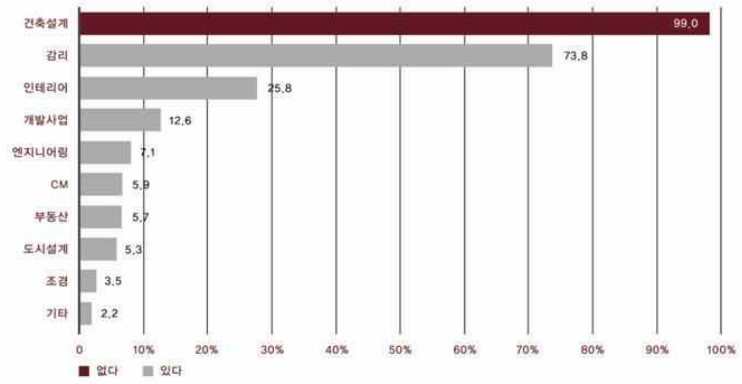

□ 국제 경쟁력 부족

국제사업 의뢰인별 수입비율 및 계약 건수

- 한국인 발주 해외 프로젝트(15.3%), 외국인 발주 해외 프로젝트 (**3.8%**)

전체 매출액 대비 국제사업 의뢰인별 수입비율 및 계약 건수



□ 부적절한 보수기준

〈설계.감리대가 기준 비교(건축설계 vs 엔지니어링)〉

설계대가

구 분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설계 대가요율(%)									엔지니어링대가기준 (건설,설계)		
공 사 비	종별	제3종(복잡)			제2종(보통)			제1종(단순)			기본 설계	실시 설계	합계
	도서의 양	상급	중급	기본	상급	중급	기본	상급	중급	기본			
5000만원		11.83	9.86	7.88	**10.75**	**8.96**	7.17	9.68	8.06	6.45	3.24	6.49	**9.73**
1억원		11.11	9.26	7.41	**10.10**	**8.42**	6.74	9.09	7.58	6.06	3.04	6.07	**9.11**
5억원		7.58	6.31	5.05	**6.89**	**5.74**	4.59	6.20	5.17	4.13	2.01	4.03	**6.04**
10억원		6.48	5.40	4.32	**5.89**	**4.91**	3.93	5.30	4.42	3.54	1.77	3.55	**5.32**
100억원		5.50	4.59	3.67	**5.00**	**4.17**	3.34	4.50	3.75	3.00	1.51	3.01	**4.52**

〈설계.감리대가 기준 비교(건축설계 vs 엔지니어링)〉

감리대가

구 분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 (%)			엔지니어링 대가기준(%) (건설.감리)
공 사 비	제3종(복잡)	제2종(보통)	제1종(단순)	공사감리
5천만원	2.46	2.24	2.02	3.02
1억원	2.32	2.11	1.90	2.85
5억원	1.57	1.43	1.29	1.89
10억원	1.35	1.23	1.11	1.66
100억원	1.14	1.04	0.94	1.41

서울의 건축정책

과제 및 해결방안

Contents



1 서울의 일반현황

2 서울의 건축정책 과제 및 해결방안

첫번째 : 서민주거불안 해소

두번째 : 주거유형의 다양화

세번째 : 서울의 정체성 보존

네번째 : 한강을 시민의 품으로

다섯번째 : 녹색 선진도시 구현

여섯번째 : 도시의 입체화, 복합화

서울의 일반현황

- 인구 : 10,456천 명
- 행정구역 : 25개 자치구, 440동
- 면적 : 605.27㎢
- 세대 : 4,097천 세대
- 세대당 인구 : 2.49명

자료 : 2009년 서울통계연보





서울의 일반현황









서울의 일반현황

공공임대 주택수 (단위:호,누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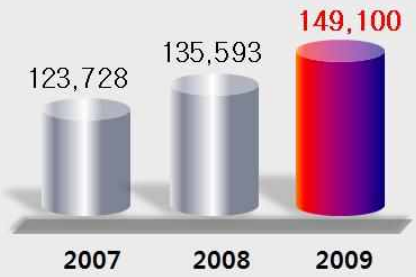

주거환경만족도 (단위: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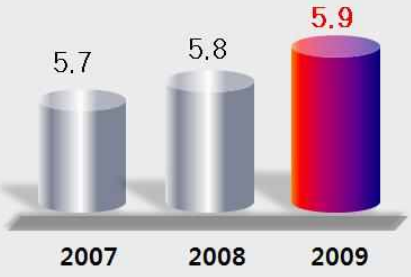

1~2인 가구 증가 (단위:가구)



고령인구 증가 (단위: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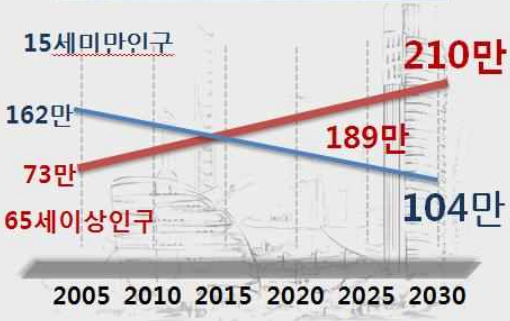

서울의 건축정책 과제 및 해결방안

첫번째 과제

서민주거불안 해소

정책 과제

서민주거불안

Hi Seoul SOUL OF ASIA

집값이 너무 비싸 !!

- 주택, **투자**와 **소유**의 개념으로 인식
- **서민 주거생활 지불비용 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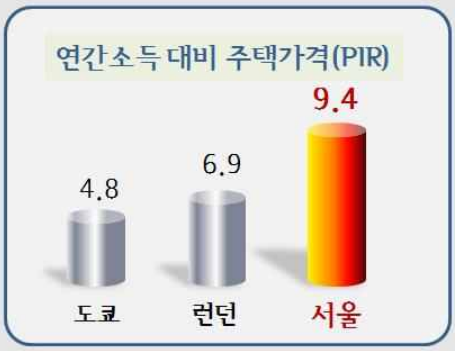

어디가서 살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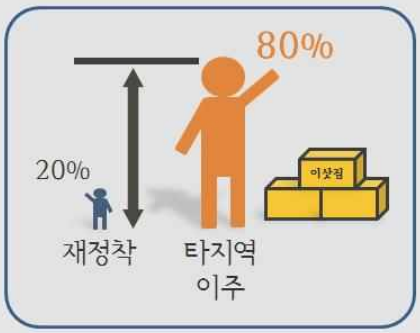

- 전면 철거 후 개발(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 거주민 **80%**는 타지역으로 **이주**

해결 방안

장기전세 주택 Shift 등

Hi Seoul SOUL OF ASIA

1 장기전세 주택 SHift

- '사는 것'에서 '사는 곳'으로 패러다임 전환
- 주변시세의 80% 이하로 최장 20년간 거주 가능한 신개념 주택
- 2009년까지 총 7,834호, 2018년까지 총 132천호 공급

2 도시형 생활주택

- 필요성 : 소형주택 멸실에 따른 주택수급 불균형 심화
  - 1~2인 가구 증가 대비 맞춤형 주택공급 필요
- 소형주택 공급 활성화
  - 주차장 설치기준 대폭 완화
  - 역세권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주택 공급
    - 기숙사형, 원룸형, 단지형 다세대 주택 등 공급

해결 방안

택지개발 주택공급 등





3 택지개발 주택공급

보금자리주택

- 토지가격이 저렴한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주택 공급
- 85㎡ 이하 주택을 주변지역 시세의 70%이내로 공급

※ 정부(1차) 2개소 10,400호, 서울시(2차) 2개소 8,813호 공급 예정

위례신도시 택지개발

- 정부 추진중인 택지개발 사업 공동시행자 참여
- 전체 46,000호 중 서울지역에 20,310호 공급

4 공공임대주택 10만호 건설

- 주택재고 10% 공급 목표, 저소득층 서민 주거안정 강화
- 목표량 : 10만호('07년~'12년)

서울의 건축정책 과제 및 해결방안

두번째 과제

주거유형의 다양화

정책 과제

아파트 위주 주거유형 획일화

Hi Seoul SOUL OF ASIA

아파트 공화국

- 총 주택 중 56%가 **아파트**
  - 공급자 중심의 아파트 위주 공급 주거유형 획일화
- 집단개발방식 **공급** 중 99% 가 **아파트**
- 연간 총 주택공급량 중 73%가 **아파트**



유형별 주택 비율

유 형	단독	다세대	아파트	연립	기타
비 율	17.8%	18.8%	56.3%	5.8%	1.3%

해결 방안 1

주거유형 다양화

Hi Seoul SOUL OF ASIA

아파트화 방지

- 서울시 전체 주거지역은 307.5㎢
- 7층이하 저층주거지역 163.5㎢(53%)



- 저층 저밀도 개발 " 도시형 타운하우스" 건립
- 보조형 주거관리 사업 추진

※ 마을단위 보안시스템 구축, 주차공간 확보, 건물기능개선 등



→ **아파트화 방지**



해결 방안 1 주거유형 다양화

Hi Seoul SOUL OF ASIA

소규모 블럭형 정비사업



- 기존 가로망, 도로구조 활용 가능한
  블록단위 정비모델 개발
  – 2종 이하 일반주거지역, 인접지 확장 가능성 등을 바탕으로 대상지 선정
- 용적률 완화, 공원 설치기준 완화 등 활성화 방안 검토



조화로운 구릉지 개발

- 구릉지 개발시 **'특별경관설계자 제도'** 도입
- 산 구릉의 자연경관과 주택이 조화



해결 방안 1 주거유형 다양화

Hi Seoul SOUL OF ASIA

건축물 디자인 다양화

- 성냥갑 아파트 탈피, 형태와 바람길, 경관(야경)을 고려한
  디자인 다양화



- 객관화, 계량화된 공동주택 심의기준 제정, 시행
- 우수디자인 설계 위한 인센티브 도입
- 디자인 제약 관련 법령 발굴 및 정비





해결 방안 2 주거지 종합계획

Hi Seoul SOUL OF ASIA

주거지종합관리계획 및 관련법 제도 통합

〈현행〉 개별사업단위의 주거지정비로 인한 난개발

국토계획법 지구단위계획 — 연계 부재 — 도정법 정비사업 — 연계 부재 — 도촉법 재정비촉진사업 — 연계 부재 — 국토계획법 도시계획시설사업

〈개선〉 광역단위 총괄계획 · 관리



해결 방안 2 주거지 종합계획

Hi Seoul SOUL OF ASIA

주변지역과의 연계를 고려한 주거지 정비

단위 사업별 주거지 정비



주변지역과의 연계를 고려한 주거지 정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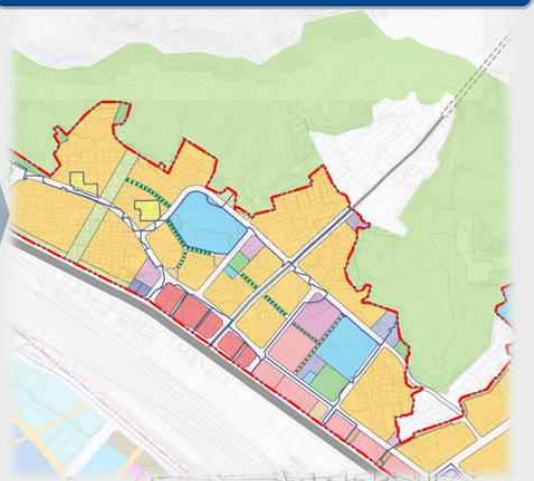

해결 방안 3 휴먼타운

Hi Seoul SOUL OF ASIA

주택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서울휴먼타운"*

아파트위주의 주택 정책



다양한 주거유형 공존

서울휴먼타운



+

재개발사업



해결 방안 3 휴먼타운

Hi Seoul SOUL OF ASIA

아파트의..

보안·방범 및 편의시설이 확보된 거주환경



+

저층주거지의..

골목길과 커뮤니티가 살아있는 정주환경



아파트와 저층주택의 장점을 하나로!

"서울휴먼타운" Seoul Human Town

서울의 건축정책 과제 및 해결방안

세번째 과제

서울의 정체성 보존

정책 과제

서울의 정체성 상실

우리의 고유 문화자산 전통가옥과 골목, 옛모습이 사라져 간다

재개발 전



전면 철거



재개발 후



- 주택 자산증식 수단 한옥 헐고 아파트나 현대식 주택 건립

  → **한옥멸실 가속화**

  ※ 현재 4대문안 3,654동, 4대문 밖 10,049동만 존재

- **전면 철거** 위주 정비사업,

  근 · 현대 마을 모습 및 커뮤니티 보존되어 있는

  104마을, 옛길과 기성시가지 사라질 위기



해결 방안 1 한옥의 보존과 공존

향후 10년간 3,700억원 투자로
총 4,500동의 한옥보존 및 진흥





북촌지역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문화 유산상 선정(09. 8. 28)

한옥멸실제어

- 재개발예정구역 내 **한옥 존중 개발계획 수립, 한옥 멸실제어 관련법령 정비**

한옥보존지원

- 한옥 지원사업 **대상지 확대**
- **개보수 비용 상향조정**

한옥신규조성

- 한옥 없으나 개발에 한계가 있는 지역,
  한옥복합단지 조성

해결 방안 2 근·현대적 마을 및 커뮤니티 보존

104마을 보존

- 노원구 중계본동 104번지 일원
- '67년 도심불량주택정비계획으로 집단 이주
- **자연경관 및 지형에 순응**하는
  단지계획 및 건축계획수립 예정







해결 방안 3

기성시가지 리모델링 활성화



건축물 보존이 필요한 지역



골목길 보존이 필요한 지역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

용적률 30% 인센티브

기성시가지 활성화 지역



소형주택 공급이 필요한 지역



신 성장 타운 기반 조성

서울의 건축정책 과제 및 해결방안

네번째 과제

한강을 시민의 품으로

정책 과제

한강의 사유화

Hi Seoul SOUL OF ASIA

한강 특혜?!

- 한강 인접지역 **85% 이상**이 **주거지역**
- 획일적이고 단조로운 수변경관
- **병풍형 아파트**, 접근성 · 문화경관 등 공적공간 확보 저해





해결 방안

한강 공공성 회복

Hi Seoul SOUL OF ASIA

주거중심의 토지이용 → 복합적 토지이용을 통한 **공간구조개선**

획일적이고 단조로운 수변경관 → 스카이라인 및 높이관리를 통한 **경관개선**

한강의 사유화 → 접근성개선과 공공시설 도입을 통한 **공공성 확보**











해결 방안

한강 공공성 회복

현재 압구정 지구



개별 재건축시



한강선언 구상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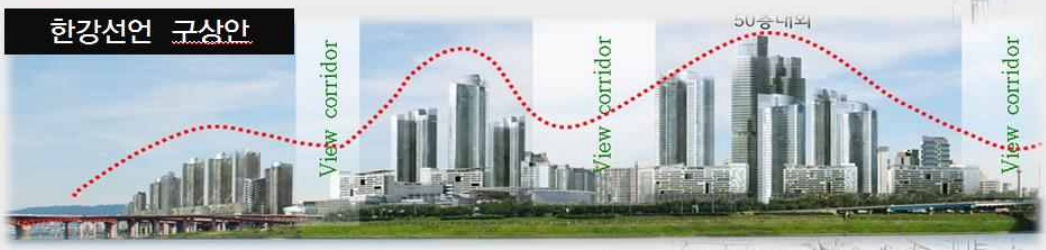

서울의 건축정책 과제 및 해결방안

다섯번째 과제

녹색 선진도시 구현

정책 과제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량 증가

지구의 온난화

- 지난 100년간 지구온난화 현상 심화 → 지구 연평균 기온 0.74℃ 상승
- 우리나라 기온은 100년간 → 지구 연평균 1.5℃ 상승(서울 2℃)
- '92년 유엔 기후협약 채택으로 기후변화 대응 필요

건물분야 에너지 소비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

- 서울시 의 CO2 배출의 68.3%, 에너지소비의 59.2% 차지

서울시 에너지연소 부문 온실가스 배출비율



*출처 : 영국표준협회(BSI), 2009

서울시 부문별 에너지 이용율



*출처 : 에너지산업연구원,2009

CO_2 배출 억제 및 에너지 소비 감축 필요성 대두

해결 방안 1

녹색선진 도시 구현

『2030 그린디자인 서울』 녹색건축 목표 실행

- CO2 40% 감축, 신재생에너지 20% 달성 목표

- 온실가스 :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9,954천tonCO2 감축
- 에너지이용 : 2030년까지 2000년 대비 1,785천TOE 감축
- 신재생 에너지 : 2030년까지 1,428천TOE 달성

[서울시 건축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서울시 건축부문 에너지 이용량 감축 목표]



해결 방안 1

녹색선진 도시 구현

신규 건축물의 친환경 · 에너지 성능 강화

▪ 에너지 소비 총량제 도입('10년)

구 분	1 단계 ('11년)	2 단계 ('14년)
주거용('09년 대비)	30% 감축	60% 감축
업무용('09년 대비)	15% 감축	30% 감축

▪ 에너지 효율인증 의무화 도입 : 2등급 → 1등급



태양광발전시스템

도시녹화 실현

옥상 텃밭



외피 Sky Far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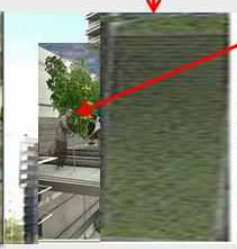

중층 아그로 파크



친환경 저 에너지 건축물



서울의 건축정책 과제 및 해결방안

여섯번째 과제

도시의 입체화, 복합화

정책 과제

도시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

도시의 패러다임 Shift

	일원적 양적성장 불의 시대	다원적 질적성장 자연과 물의 시대
철학		
사회	아날로그 일 방 향 실용/합리/기능 자동차 용도분리	중심의 이동 → 디지털 네트워크 감성/문화/디자인 사람 용도복합
도시	Urban Sprawl	Compact City
트랜드	기계화/산업화 시대에서 **정보와 통합의 시대**로 변화	

대응 방향

도시공간구조의 개편

평면적 도시구조

- 한정된 토지자원
- 조닝에 의존한 토지이용
- 교통문제 유발



건조한 정주환경

- 자동차 중심의 도시환경
- 어메니티 공간의 부족
- 도시경관의 획일화



소통의 단절

- 도로에 의한 보행접근 단절
- 아파트단지에 의한 한강사유화
- 배후조망의 차단



다층적 토지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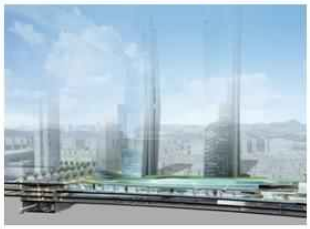

사람 중심도시



소통과 공유



해결 전략

도시의 입체화, 복합화

Hi Seoul SOUL OF ASIA

▪ 토지 & 도시공간의 이용효율을 높이기 위해 공간적 범위를 수평, 수직적으로 확장 입체화하고, 다양한 기능을 체계적이고 합리적 방식으로 융합시키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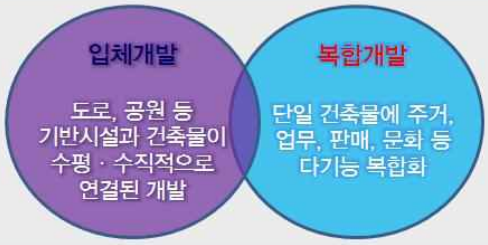

▪ 실제이해 → 도시·비도시계획 시설의 입체화 + 다양한 용도의 복합화 + 입체보행 네트워크

도로 + 건축물

– 다양한 결합
– 지하, 지상, 공중



철도 + 건축물

– 다양한 개발
– 민자역사, 철도 상,하부 등



기타시설 + 건축물

– 공원, 체육, 유통시설 등 다양한 시설의 입체화



건축물 + 건축물

– 다양한 용도의 복합화
– 건물간 입체적 보행 네트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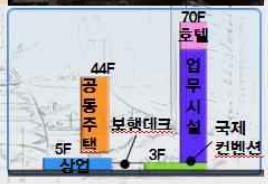

35

해결 전략

서울의 입체화, 복합화 컨셉

Hi Seoul SOUL OF ASIA



건축품격향상과 건축문화진흥

한국건축가협회 수석부회장 이광만

글 순 서

Ⅰ. 서언
Ⅱ. 품격 있는 건축과 공공건축가 제도
Ⅲ. 지식산업으로서의 건축
Ⅳ. 건축기본법을 근거로 한 건축문화의 진흥
Ⅴ. 결언

Ⅰ. 서언

건축은 국가와 사회적 자산에 있어서 공적이면서 동시에 사적인 구조물이다.
그리고 그 수준도 제각기 달라서 수준 이하의 집도 이 땅에 존재하고 우리가 앞으로 가져야 할 집의 모습이 또 있을 수 있다. 게다가 건축은 매우 복합적이다. 건축은 예술과 문화를 가지면서도 반대편에 서 있는 기술이라는 수단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공학적 산물이기도 하다.
이러한 개념의 건축 품격을 높여야하는 것은 국가의 문화 수준 그 자체를 가늠하는 일이다.
지금까지 이렇다 할 건축정책이 부재한 것은 건축하는 사람도 요구하지 않았고, 건축을 요구하는 사람도 필요성을 느끼지 않으며, 건축을 통해 공간을 기획하는 공공도 건축의 중요성과 그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온 결과라 할 것이다. 이에, 실현가능성을 위주로 건축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과 이를 구현할 메카니즘의 토대마련을 목적으로 건축의 품격향상과 문화진흥을 화두로 몇 가지 살펴보기로 한다.

Ⅱ. 품격 있는 건축과 공공건축가 제도

1. 공공건축가란?
   - 한 나라의 품격은 국토 및 공간환경, 건축물의 질적 수준이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프랑스 파리, 호주 시드니, 미국의 워싱턴D.C나 뉴욕, 스페인의 빌바오나 바르셀로나 등의 선진국 사례를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이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바임

- 우리도 잠재력이 있는 유구한 역사와 유산도 있고, 질적 수준이 많이 뒤떨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국가적 품격을 갖추지 못한 이유는 다름아닌 이러한 일을 가치있게 추진할 수 있는 체계와 조직, 인적구성이 부족하기 때문임.
- 그래서, 품격 있는 건축을 하려면 시급히 공공건축가 제도가 시행되어야 할 것임
- 그렇다면 공공건축가란 무엇인가? 건축은 통상적으로 기획, 사업발주, 설계, 시공의 단계를 거쳐 사용자가 사용하게 되는데, 국가나 공공에서 시행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1인의 건축가로 하여금 건축을 위한 진행단계를 총괄하고 관리·운영할 수 있는 건축커미셔너와 다수의 건축가가 별도의 조직을 구성하여 전문 분야별로 자문활동을 하고 관리·운영할 수 있는 이 모든 건축가가 공공건축가에 해당함

2. 해외사례

- 네덜란드 국가건축가제도
  - ·주택공간계획환경부 산하 국가건설청에 소속
  - ·건축정책의 추진 및 감독, 국가핵심사업 등 선도정책사업에 대한 자문, 민관협력사업의 개선에 관한 자문, 새로운 정부청사 건물의 계획 관련 자문, 역사적 건출과 기존 건물의 문화적 시사점 및 향후 활용 가능성 기획, 건축가 선정 과정에 대한 자문 및 추천 업무 등
  - ·중앙 정부가 관여하는 건축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전반적인 건축을 모두 포함하여 공간계획, 기반시설, 조경 개발 등에 대한 정부의 요청이나 자발적인 참여로, 프로젝트 초기단계에서부터 기본방향을 정하여 추진
  - ·2004년부터는 국가건축가는 국가자문위원회의 의장직을 맡아오고 있으며, 정부에 자문활동을 실시하고, 내·외부 컨설턴트와 함께 융통성 있고 프로젝트 중심의 접근방식을 독려하고 있음
- 영국 건축·건조환경위원회의 프로젝트 지원제도
  -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1999년에 창설된 법적기구
  - ·16명의 커미셔너와 위원회 산하 40여명의 관련 전문가로 구성
  - ·디자인리뷰를 통해 정부 및 지자체의 주요 건축물과 공공공간 프로젝트의 발주자, 개발업자, 건축가 등에 대한 조언
  - ·공공기관에서 심의를 담당하는 주요 건축·도시계획 사업 등에 대한 직접적인 권고를 통한 공공건축의 디자인 개선과 공공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전문디자인기술 지원, 건축물 및 공간환경에 대한 교육여건 개선과 기술개발 장려 및 건축과 디자인, 공공공간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캠페인을 통해 공공분야의 수준 향상 도모
- 일본 구마모토 아트폴리스 프로젝트 커미셔너제도

・구마모토현에 소속되어 건축가 선정과 사업참가주체 결정 등의 절대적 역할 수행
・프로젝트의 기획 및 자문, 설계위탁방식 제안, 설계자 추천・사업주 및 설계자에 대한 조정 및 판정의 역할 수행

- 영국 버밍험시의 도시디자인 어드바이저 제도
・시의회가 도시다지인 어드바이저라는 공공건축가를 선임하고 운영
・3년~5년 임기로 연임이 가능하며 시의 모든 도시계획 및 정책에 관여하여 도시비전을 제시하고, 공공프로젝트뿐 아니라 민간프로젝트에 대하여서도 디자이너를 선정하는 역할 수행.

- 미국 덜러스시의 시건축가 제도
・덜러스시에서 이뤄지는 건축관련 조사, 개발, 디자인, 건설, 재생 프로젝트 등에 대하여 관리, 계획, 조직, 감독, 평가의 역할 수행
・공간적, 기능적 요구사항에 대한 컨설팅, 법규검토, 디자인리뷰, 프로젝트 프로세스 설정, 계약과 협상, 프로젝트 조정과 평가, 건설에 대한 감독 등의 역할 수행

- 미국 뉴욕시 민간전문가 임용 제도
・건축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도시계획국과 건축국의 책임자로 민간전문가를 임용, 도시의 물리적 사회경제적 계획과 관련된 일들에 대해 지원과 조언의 역할 수행
・최근에는 수석도시설계전문가를 선임하여 전문가 추천, 대규모 계획 및 개발 프로젝트에 관하여 관련 분과 및 팀과 협력작업 수행, 마스터 플랜 및 디자인가이드라인 수립 등

3. 공공건축가 제도의 도입

- 건축커미셔너 제도 도입
・1인의 역량있는 건축가를 정부가 선임하여, 일정기간 동안 각 부처나 기관에서 수행하는 모든 프로젝트의 기획, 사업시행 및 평가를 일관되게 자문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별도의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복수의 건축커미셔너를 추천토록하고 결정권자가 최종적으로 선정하는 방식으로 일정기간 비상근직으로 근무하며 부처 및 기관의 일관된 사업 추진

- 공공건축위원회의 설립
・각 분야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공공건축위원회를 설치하여 협의에 의한 결정을 통해 각 사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위원회 산하에 분야별 자문단과 업무지원 부서의 설치 및 운영

- 등록 건축가제도의 도입
・턴키 및 PQ 입찰제도 등의 부정적인 측면을 보완하고 건축 디자인의 질

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

・국내외 건축사자격증 소지자, 정부가 주관 또는 후원한 건축상 수상자, 건축설계경기 수상자 등 일정 수준의 능력을 검증받은 자들을 대상으로 건축커미셔너 및 자문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결정권자가 15인 내외의 건축가를 지정하여 등록, 인력풀로 활용하고 지속적인 사업의 추진을 도모.

4. 기대효과

- 정부 및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건축 및 공간환경 조성사업의 질적 향상과 함께 일관되게 추진.
- 사업주체의 비전문성으로 인하여 기획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초기에 전문가가 개입함으로써 원활한 사업의 추진이 가능.
- 정부부처 및 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건축가를 고용함으로인해 품격높은 공간환경 조성이 가능하며 일자리 창출 등에도 기여.

Ⅲ. 지식산업으로서의 건축

1. 개요

- 지식경제부 소속법령 중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 1항에 의거 지식서비스산업의 범위에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으로 건축은 이미 지식기반산업으로 분류되어 있음.
- 이에, 건축을 지식서비스산업적 측면에서 접근하여 그에 준하는 정부 지원과 혜택을 받도록 정책화 함이 필요함.
- 이같은 견지에서 정부의 지식서비스산업 대한 지원현황을 살펴보고 건축산업에서 건의할 수 있는 내용들을 산출하여 이에 대한 실현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이 요구됨

2. 지식기반산업으로서의 건축

- 지금까지 문화부와 국토부를 중심으로 건축에 관한 사업이 이루어졌었다면, 건축의 특성을 고려한 지식기반산업으로서 독립적인 분야로 활동을 전개해 나가야함
- 건축지식기반사업을 벤쳐기업에 대응해 보면 그 지원혜택은
  ・법인세, 등록세 등 각종 세금 우대
  ・중소기업정책자금, 신용보증 심사 등 지원제도 심사 시 우대
  ・해외진출 촉진을 위한 지원 부여 (박람회, 전시화, 컨설팅, 시장조사)
  ・특허 및 실용신안 등의 우선심사 대상

・벤처센터 등 벤처시설 입주시 우선대상, 조달청 입찰시 가점부여
・국가정책과제 신청시 가점 부여 등이 있음

- 건축산업도 이러한 혜택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화 되어야 할 것이며, 더 나아가 국가의 품격을 높이기 위한 제일 당면과제로 인식되어 주도해 나가야함
- 건축가(사)는 사회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드는 수단으로서, 나아가 고도의 질을 가진 생활환경을 창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되어야 함. 이것이 건축산업적 측면에서도 가져햐 할 기본 인식이며 이에 건축가(사)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이 주어지는 것이며 산업정책적으로도 중요한 팩터임을 정부 주요과제가 되어야하는 이유임.

3. 기대효과

- 새로운 고급 일자리창출
- 일자리 지키기를 위한 역량 나눔
- 민관의 일자리 나누기 노력 강화 등이 있음

Ⅳ. 건축기본법을 근거로 한 건축문화의 진흥

1. 문화컨텐츠로서의 건축

- 건축기본법에서는 건축의 생활공간적 공공성구현, 사회적 공공성 확보 및 문화적 공공성 실현을 법의 기본방향으로 명시.
- 이와 같은 기본방향을 전제로 국토해양부 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협의하여 건축물 및 공간환경의 개선과 건축문화의 진흥을 위해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공공공간의 건축디자인 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위와 같은 건축기본법의 기본방향 및 건축문화의 진흥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건축가의 위상 재정립과 건축을 문화컨텐츠로서 바라볼 수 있는 인식제고가 필요함.
- 건축이란 건축기본법 제3조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기획,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일련의 총체적인 것을 총괄하는 자가 건축가임. 단순히 설계도면을 그려내는 기술인이 아님.
- 더불어 건축물과 공간환경에 대한 전체적인 Master Plan을 수립하고, 건축물 및 공간환경에 담겨야 할 컨텐츠를 구성하는 자가 건축가의 역할이라는 것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전환이 시급함
- 건축기본법 이 외에도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서도 문화예술의 범주에 건축

을 포함하고 있음.

- 다만, 건축이 문화예술의 범주에는 포함되어 있으나 문화산업진흥법에서는 문화산업이 문화예술을 수단으로 하는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건축(설계) 또는 건축디자인을 포함하고 있지 않고 있어서 규정의 개정도 필요함

2. 지식산업으로서의 건축

- 건축이 지니는 경제적인 가치는 지대하다는 점에서도 건축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임. 핀란드 정부의 건축정책은 “국민이 소유하는 고정 자산의 3분의 2가 건물 속에 있으며, GDP와 노동력의 많은 부분이 건설 분야에서 얻어짐. 그렇기 때문에 공공은 국가의 경제적 활동에 기여하는 좋은 건축이 창조적으로 만들어지고 보존되며 관리되도록 하여야 하며 나아가 건축은 국제적 경쟁력을 통해 문화산업을 선도하는 분야라는 점에서 그 경제적 가치가 증대되도록 하여야 할 것임.” 이라고 명시되어 있음
- 건축은 사적이지만 공적인 산물임. 따라서 건축가는 사적 직업이 아니라 국가가 인정하고 국가가 해야 할 일에 대하여 자격을 주어 역할을 맡긴 이들이기에 건축가는 자신이 건축물을 통해 사적 이윤을 얻는 전문가가 아님

3. 품격 높은 건축 및 국토환경의 조성

- 건축에 있어서의 품격이란 주변 환경과의 관계, 규모, 형태, 구조, 재료, 시공수준 등을 통하여 그 목적과 지역의 정체성을 창출할 수 있는 적절성을 말함
- 이는, 건축관련 분야에서 현재까지 시행되어 온 정부주도형의 대규모 단지개발, 전면 철거 형태의 재개발 및 재건축 등의 프로세스에서는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것임
- 대형사 위주의 대규모 부동산 정책에서 유휴지 및 폐사지를 활용하여 소규모 저밀도 개발을 유도하고 특히, 소외계층이나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적 패러다임 전환 필요
- 아울러, 건축의 가치 실현을 위한 모색의 주요한 방안으로 정부 주도의 획일적인 정책위주의 개발이 아닌 다양성, 창의성을 기반으로한 민간주도 정책으로의 방향 전환도 무엇보다 시급함

Ⅴ. 결언

건축정책은 공공기관이 갖추어야 할 정책을 이끌어내기 위함이다. 국가적 가치를 갖는 중요한 건물들은 국가가 짓고 소유한다. 따라서 정부는 모든 국민이 좋은 건조 환경을 소유하고 누리는 권리가 지속되게 하고, 현재의 건조 환경과 문화유산을

잘 간직하도록 책임을 부과한다. 정부는 건축정책을 통해 건축법령과 지도를 하며, 올바른 건축가가 지역을 위해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정부는 건축을 교육하고, 건축에 대한 공공적 인식이 고양되도록 유효한 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것이 국가와 공공이 건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선도적으로 건축의 가치를 실현해야 하는 이유이다.

정부는 이런 측면에서 올바른 건축이 창조되도록 건축정책을 신중하게 설정해야 하며, 건축정책은 건축의 공공성에 바탕을 두고 국민의 건축적 자산을 보호하고, 건축의 품격을 향상시킨다. 또한 건축정책은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통해 집단의 상호작용을 촉진하여 공동체 사회의 물리적 환경을 제고하며, 나아가 국제적 환경 속에서 경쟁력 있는 건축산업이 창출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야 한다.

건축가는 공공적 측면에서 역할을 관장해야 하고 권리와 의무를 갖는 윤리 의식이 고양을 갖춘 자로 육성되도록 정부는 권장하고 이끌어 주어야하며, 이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공공 지식인으로 거듭날 것이다.

품격건축정책은 건축이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으로 차지하는 가치가 지대함을 인식하는 것이다. 건축은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드는 수단이다. 나아가 건축은 고도의 질을 가진 생활환경을 창조하기 위한 수단이다. 그리고, 이 모든 생활환경은 모든 국민이 향유해야 할 권리이다. 그러므로 모든 공공 기관은 이 권리를 실현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다행히 우리에게는 국가건축정책위원회라는 총체적인 정부기관이 있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역할은 결국, 국가와 지방의 문화적 정체성을 총체적으로 창조하게 되는데, 이 결과에 주목하는 것이 건축정책이며 이를 효율적으로 기획하고 시행하는 것이다.

복합성과 네트워킹

박경립(강원대학교 교수, 대한건축학회 부회장)

글 순 서

1. 위기는 기회인가?
2. 컨텐츠의 힘과 건축설계
3. 창작과 건축가 산실로서의 건축사사무소
4. 교육과 제도 그리고 행정 지원
5. 복합성과 네트워킹
6. 시급한 제도개선 Items

1. 위기는 기회인가?

급변하는 환경은 안정을 흩트리고 위기를 초래한다. 쓰나미가 그렇듯 진앙지는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고 그 여파를 받는 해변가는 바다 속 깊이 숨어 다가오는 재앙을 보지 못한다. 그것이 현실의 어마어마한 파도로 가시화되어 덮칠 때는 이미 늦은 때이다. 그러나 미리 쓰나미의 출현을 예측하고 대비하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대부분 위기는 미리 감지하고 대비하고 있으면 기회가 된다. 건축계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21세기 건축설계 분야의 앞날을 위하여 기회의 한국건축이라는 이름으로 토론회를 마련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2. 컨텐츠의 힘과 건축설계

20세기 들어 본격적으로 산업사회로 들어서며 건축은 건설산업과 결속하여 생산의 대상이 되었다. 모듈의 설정과 표준화, 프리훼브 등 효율적 생산을 위한 노력은 일찍이 시도되어 생산성을 높였고 두 차례의 세계대전과 크고 작은 전쟁을 거치며 건설산업은 크게 성장하였다. 건축설계 분야도 시대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훌륭한 건축가들의 다양한 노력에 의해 성장하였다. 척박한 풍토였던 우리나라도 소수의 건축가들의 앞장선 고군분투로 발판을 마련하고 경제 성장과 함께 양적 발전은 물론 질적으로도 성숙한 단계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세기를 넘으며 탈산업사회의 여러 징후가 나타나며 전 분야에 걸쳐 많은 충격을 주고 있으며 건축분야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다. 새로운 시대의 도

래와 지난 시대의 관성 사이에 마찰로 인한 불협화음이 곳곳에서 출현하고 있지만 이 현상은 구조적인 변화의 한 모습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으며 아직도 일상에서는 산업화의 시대의 영향이 지대하다고 할 수 있다. 대량 생산, 대량 공급, 대량 소비의 수레바퀴는 새로운 시대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하지 못한 채 아직도 작동하며 적절한 전환의 시점을 놓치게 하고 있는 것이다.

이곳에서 건축의 본질에 대하여 논하는 것은 무리한 일이나, 변화하는 사회만큼 건축을 보는 관점도 변하고 있다는 것을 살펴보는 일은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이미 개개 건축 자체의 공간적, 형태적 완결성이나 기능성 못지않게 도시의 한 부분으로서의 건축의 의미와 역할이 중요 관점으로 등장하였고 지역경관이나 도시 경관은 친숙한 단어가 되었다. 그리고 건축은 보기 좋은 도시를 넘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데 기여하여야 하며, 활력 있는 도시와 삶의 질 향상의 근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의 바람이 되었다. 건축은 21세기의 화두인 지속가능성을 담보하여야 하며, 동결된 획일적 구조와 형태보다는 다양한 환경적 대응을 하는 보다 유연한 건축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건축을 완성된 오브제로만 보는 시각에서 복잡한 관계를 이어주고 담아주는 관계의 중심으로 보는 시각은 물론, 다양한 컨텐츠를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인식해가고 있는 중이다. 건축의 공공성은 더욱 요구되고 있으며 인간성 회복과 환경적 가치의 구현 등 생산성과 단기적인 경제성에 경도 되었던 시절을 넘어서려고 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려는 건축가의 노력과 우리의 건축설계의 현장과 환경은 상당부분 괴리가 있다는 것이다. 관성의 법칙은 건축계 전반에 걸쳐있다. 세계적인 경기 침체의 영향을 받아 건축계 전체가 침체되어 있으나 여전히 생산과 개발 위주의 정책은 진행되고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으며, 소프트웨어와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보다 더 깊이 인식하고 대응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나 아직은 하드웨어의 수월성에 만족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새로운 시대의 요구와 실행 사이의 불일치를 줄이는 노력을 본격화 하여야 한다. 환경친화적 건축설계와 에너지 절약형 설계는 구호에 그치지 않고 더욱 전문화되고 다자인과 연계되고 하나가 되어야 한다. 환경공학적인 성취와 건축가의 디자인 사이의 갭을 메우는 소통을 시작하여 녹색 성장 시대의 새로운 건축을 실현 가능케 하여야 한다. 건축가 이름은 실종된 채 부동산 경기 조절에 발목이 잡혀있는 복제 반복의 공동주거 생산에서 벗어나, 생명력 있는 다양한 주거 창출로 전환하여야 한다. 획일적인 재개발에서 지역의 역사 문화적 자산의 가치를 최대화하며 지형과 장소성이 살아있는 설계로 전환하여야 한다. 대지의 분할과 조성을 획일화하던 종래의 관습에서 벗어나 대지를 선정하고 해석하고 조성하는 시기부터 건축가가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 놓아야 한다.

우리는 그간 건축설계 시장의 문화적 중요성과 산업적 역할에 주목하지 않았다. 양적 성장에 경도되어 소프트웨어 파워 키우기를 외면하여 온 것이다. 아이폰 충격

의 경험을 통해 컨텐츠의 중요성을 실감하고 있는 요즈음이 건축의 소프트웨어의 힘인 설계분야의 성장을 고취할 적기라고 본다. 세계와 맞서려면 형식과 내용 모두 재정비 하여야 할 것이다. 오랜 역사를 거치며 발전하여온 우리의 우수한 공간언어와 자연 친화적 건축을 재해석하며 세계화 하여야 한다. 건축가들도 새로운 시대의 환경 변화에 맞는 더욱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설계로 새로운 시대의 건축과 도시를 열어야 한다. 정책 당국도 건축의 사회적 가치와 건축설계의 무형적 유형적 가치를 인식하고 건설 분야가 오랜 투자와 경험을 통해 발전하였듯이, 건축설계에 대한 끊임없는 지원과 투자를 통하여 미래의 동력을 만들어 내어야 한다.

3. 창작과 건축가 산실로서의 건축사사무소

건축분야가 활력 있으려면 건축가의 설계 작업 현장이 살아있어야 한다. 건축사사무소는 건축가들의 작품 생산의 산실이자 건축과 도시 만들기의 출발점이며 장래 건축가가 되려는 준비생들의 실전 교육의 터이다. 건축가로서의 성장은 대학교에서의 교육과 건축사사무소에서의 인턴과정을 포함한 수련과정, 건축사시험, 건축사 지속교육 등이 긴밀히 이어져야 한다. 특히 새로운 교육제도와 연계된 인턴과정은 미래의 건축사를 길러내는 장치이자 건축사 사무소의 실질 내용을 배우며 담당하는 전문성 실현의 과정이다. 이 과정이 소홀해 지면 미래의 건축설계의 수월성을 담보하기 힘들게 된다. 그들을 담아 성장 시키려면 당연히 건축사사무소가 경쟁력을 갖추고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하여야 한다.

변화가 심한 시기에는 유연한 변화에 적응하려면 작은 몸체가 적합하다고 한다. 특히 소프트웨어가 중심이 되는 컨텐츠의 시장에서는 건축가의 창의적인 사고가 근간이 된다. 조직이 큰 경우 상당부분 조직과 생산의 효율성에 초점이 맞추어 지고 창의적인 사고는 묻히기 쉽게 된다. 건축설계는 다양한 분야의 긴밀한 협력과 통합으로 이루어지지만, 핵심이 되는 것은 건축가의 창의적인 설계 컨셉의 일관성 있는 유지이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건축생산에 이르기까지 일관성 있게 끌고 가는 작업은 마스터로서의 건축가의 몫이다. 이 행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도 뒷받침되어야 하며, 건축가가 설계한 현장의 감리를 할 수 있는 길도 자연스럽게 주어져야 한다고 본다.

건축가의 창의적인 작업에 적합하다는 아트리에 규모의 건축사무실의 필요는 컨텐츠 파워의 시대에 더욱 빛이 날 수 있다. 그러나 시스템이 잘 갖춰진 대형사무소도 충분한 역할이 있다. 대형건축사사무소와 아트리에 형의 작은 규모의 사무실은 항상 대립 항으로 취급되지만 실제로는 다양성을 담보해야하는 건축계에 이들 모두가 필요한 것이다.

그간 규모에 따른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다양한

대안이 시행되었지만 근자에 들어 건축발주 방법의 변화와 대형 사무실 위주의 성장은 작은 규모의 사무소의 입지를 더욱 위축시켜 왔다. 경제난 속에서 대형 사무실도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 작은 규모의 사무실의 경우 작업의 기회는 더욱 줄어들고 인력도 구하기 힘들며, 일이 주어져도 적절한 보수대가도 주어지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한다. 지방의 건축사무소의 인력난은 더 말할 것 없이 힘든 상황이다. 악순환은 계속되고 있으며 하는 일은 많은데 보수가 주어지는 일이 없다는 상황은 소프트웨어를 경시하는 풍조에서 나오는 것이 대부분이다. 계획설계와 타당성 조사 등은 실시설계를 빌미로 대부분 봉사하게 하는 풍조이고 이 상황은 더욱 건축사사무소를 어렵게 하곤 한다. 일반 클라이언트는 물론 관청에서 조차 타당성 조사나 계획설계비가 생략되는 경우가 있다. 적절한 보수 대가가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더욱 심해지는 경쟁은 대부분 덤핑 수주로 이어지며 건축설계사무소의 경영난과 함께 설계의 질적 저하로 이어지곤 한다. 이 현상이 더욱 심화되면 우수한 인력의 설계분야 진출의 장벽으로 작용할 것이며 현재의 건축사무소 존폐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미래의 건축사를 키우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설계는 건설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작은 비용 때문에 종종 중요성도 간과되어 왔다. 이제 건축문화 창조의 첨병이자 핵심인 건축설계분야를 담는 건축사사무소의 튼튼한 기반 조성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본격화되어야 한다.

4. 교육과 제도 그리고 행정 지원

이미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은 국제간 라운드테이블을 마련하여 국가간 서로 소통하며 자율적인 상호 인증의 시대에 들어섰다. 국가 간 무역 협상들이 늦어져 실감은 나지 않지만 세계는 이미 움직이기 시작하였고 어느 날 갑자기 문을 두드릴지 모른다. 미리 준비하여 적응력을 길러 놓는 것은 국가가 앞장서서 할 일이다. 2000년 초 변화하는 건축설계분야의 개방과 관련하여 이미 우리의 대학들은 국제 환경에 맞는 교육제도로 전환하고 교육을 시행하였다. 70여개 대학교의 건축학 교육프로그램들이 5년제로 전환하여 새로운 시대에 맞는 교육을 대비하여왔고, 국제사회의 인증을 받은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이 출범하여 20여개의 대학들이 이로부터 인증을 받았다. 첫 출발을 한 대학들은 이미 2차 인증 작업에 들어가고 있지만 행정당국은 이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지 않다. 순서야 어찌되었건 세계화의 과정에서 지혜롭게 대응한 교육계의 노력을 뒷받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하루 빨리 인증원과 등록원 등 새로운 시대의 건축사배출과 관련한 기관을 법적으로 정비하여 건축계를 뒷받침하여야 한다.

한편, 5년제로 전환한 후 가장 현실적으로 만나는 것은 교수 및 공간 확보의 문제이다. 종전의 교육에 비하여 많은 설계 교수들을 필요로 하는 건축학 교육의 실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대학 당국의 몰이해와 인접 학문 분야조차 경쟁 대상이 되는

교수 TO 확보 전쟁으로 교수 확보는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대부분 의학전문대학원과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하는 대학교에서는 우선적으로 두 전문 대학원에 교수를 할당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의사와 변호사를 배출하는 전문대학원 설치와 정원 배정은 엄격히 심사하고 결정하며 필요한 교수 수는 물론 시설의 적절성을 평가하여 질적 수월성을 국가가 보장하려하고 있다. 상당히 비교가 되는 대목으로 건축계의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다.

위와 같은 외적 조건이외에도 내부적으로 조정하여야 하는 내용도 많다. 이미 수차례의 인증 과정을 거치며 무리하거나 모호한 평가 항목을 조정하여 명백히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어 우려하였던 경직성을 벗어나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으나 각 대학교의 정체성을 쌓아 나갈 수 있게 인증 제도도 좀 더 융통성 있게 발전 하였으면 한다. 아울러 5년이라는 긴 연한에 걸 맞는 전문학위 부여도 검토 되어야 하며 인증 트랙이 아닌 4년 졸업의 길도 열어 놓아 학생들의 선택권도 넓혔으면 한다. 침체되어가는 대학원의 활성화 방안도 함께 논의되었으면 한다.
당시에는 가장 효율적이라 간주되어 5년으로 정리되어 대부분 시행하고 있는 프로그램도 좀 더 다양한 모습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제반 환경의 불일치로 5년제로 전환하지 않은 대학교와 전문대학의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진로를 위하여 전문대학원과 연계된 프로그램의 활성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한다. 다양성 시대에 맞는 다양한 제도와 교육은 우리 건축의 미래를 담보하는 가장 중요한 투자이기 때문이다.

5. 복합성과 네트워킹

건축기본법도 제정되었고 교육 기관도 국제 기준에 맞추어 전환하였는데 건축을 지원하는 움직임은 매우 느려 보인다. 건축설계의 문화적 의미와 역할을 인지하고 새로운 시대의 지식산업으로의 가치와 성장 가능성을 제도화 하려 노력하고 있다지만 아직도 건축은 건설 분야에 종속되어 있거나 다음 순위이다. 공무원의 직제도 건축직이 독립적으로 제 입지를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고위직 진출도 매우 제한적이다.
아직까지는 교육은 교육대로, 건축사 사무소는 사무소대로, 행정 부서는 행정부서대로 따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 나라의 건축문화가 제대로 정착하고 발전하기 위하여 산`관`학은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협력하여야 한다. 더욱 전문화되고 긴 학습 연한과 제도의 도입이 왜 필요했으며 그 속에 담겨진 내용 변화의 핵심은 무엇이고, 변화된 교육 내용이 사회 속에서 실현되기 위하여 사회는 무엇을 바꾸고 조정하여야 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사회는 새로운 제도에 의하여 배출되는 예비 건축가들을 맞을 준비를 하여야 하며 그들이 미래 한국건축 창조의 중심이

되게 교육하고 훈련 시켜야 한다. 관은 복합적이고 복잡한 건축의 업무들이 적절히 수행될 수 있게 관계 부처 간에 원할히 소통하며 명쾌하게 제도화시켜야 한다.

그러나 건축사 업무를 규정하고 관련하는 많은 기관과 부서들은 부분적으로 나누어진 부분만을 취급하고 있으며, 상호 소통의 중요성을 인지하더라도 전체를 조율하고 움직임의 단초를 제공하는 중심은 없다. 건축사협회와 건축가협회 등이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지만 때로는 이익단체의 이익 추구로 폄하되기도 한다. 건축설계는 건축법의 적용만으로 설계되지 않는다. 다양한 분야의 법이 적용되고 조정된다.

건축기본법은 건축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정신을 법제화한 것이므로 모든 건축 관련법의 기본과 중심이 될 것이나, 이에 대한 후속 조치가 이어지지 않으면 실효성 있게 작동하지 않게 된다. 각 관련 부서는 칸막이를 걷고 소통과 접속을 시작하여야 하며 새로운 법 취지에 맞추어 관련되는 법과 조례 등을 걸맞게 조정하는 일부터 하여야 한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다.

건축정책 제안

대한건축사협회 전 영철

글 순 서

1. 들어가는 글
2. 건축행정 System
3. 건축인력관리 System
4. 건축관련 업무실적관리 System
5. 대국민 홍보 및 교육
6. 시급한 제도개선 Items

1. 들어가는 글

건축을 통하여 국가의 품격을 높이고자 하거나, 명품 건축물을 만들어 세계적 관광자원으로서의 건축물을 탄생시키기 위해서는 건축의 품격을 높여야 한다. 건축의 품격을 인정받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중의 하나는 많은 명품건축물의 탄생이다.

건축 종사자들, 특히 건축물의 기획, 계획, 설계를 하며 건축분야의 최고 전문가 역할을 하는 건축사들의 사회적 지위가 확보되지 않으면 명품건축은 탄생되기 어렵다. 건축사들의 사회적 지위확보는 의사, 변호사와 더불어 3대 전문가 집단으로 인정되는 건축사에 대한 존중과 정당한 업무대가를 보장함으로서 이루어진다. 역설적으로 표현하자면 건축을 통하여 국가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서는 건축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와 정당한 보수대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건축은 건축사의 기획과 설계로부터 시작된다. 그러므로 건축사와 관련된 정책은 국가건축정책의 핵심일수 밖에 없다. 그러나 국가건축정책기본 5개년계획안에는 아래의 여섯 가지 테마를 가지고 있지만 건축사 분야는 건축・도시산업의 고도화라는 제목 속에 건축사의 역량강화, 신진건축사 육성시책 추진의 단편적인 요소만 있을 뿐이다, 또한 국가건축정책 수립을 위한 기본적인 문제해결들을 위한 대책은 없는 듯하다.

1)국토환경 디자인 향상.
2)건축도시 환경의 개선.
3)녹색건축・도시구현.
4)건축・도시산업의 고도화.

5)고유한 건축문화의 창달.
6)건축문화의 세계화 촉진.

이에 필자는 이미 발표된 국가건축정책기본 5개년계획안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들로서 국가건축의 품격향상과 건축발전을 위한 기본적이며 원론적인 대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2. 건축행정 System

2-1 행정조직 개편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6.25전쟁 이후 폐허가 된 국토를 재건하기 위한 기본 정책으로 건설을 우선으로 삼았다. 또한 의식주 해결을 위한 주택공급을 국가정책의 주요 목적중 하나로 하였다. 모든 건축정책의 우선순위는 건설과 주택이었다. 그래서 부서의 이름도 건설부였었고 건축주무국은 주택국이었다.

건축기본법 제3조에서 건축은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기획, 설계, 시공(건설 및 감리), 유지관리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건축 속에 설계가 있고 건설이 있다. 주택은 많은 건축물 종류중의 하나일 뿐이다. 선진국 문턱에 있는 대한민국의 지방자치 단체 행정조직에 아직도 주택국 속에 建築科 또는 건축 팀이 존재하고 있음은 대의를 보지 않는 경직된 행정시스템의 대표적인 모습이다. 이제는 건축의 본질을 행정조직에서 찾아야 한다. 전국 건축물의 숫자가 700만동을 향해가고 있음을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조직 속에 建築科 또는 건축 팀마저 없는 현재의 일부 행정조직 상황은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포기하는 것이다. 건축의 본질을 살릴 수 있는 행정조직 개편은 국가의 품격향상과 국민을 위한 필수조건임을 인지하여야 한다.`

2-2 건축관련 기본 통계자료를 위한 科또는 局의 신설

우리나라는 건축현황에 대한 자료를 구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 발주제도의 변경을 요청하기 위하여 전국의 발주현황을 찾으려 해도 찾을 수가 없다. 우리나라 건축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들의 숫자를 파악하는 것은 물론 전국적인 건축물의 규모별, 용도별 현황과 허가 및 신고의 숫자 파악도 필자 개인 입장으로는 어림도 없다. 건축관련 자료는 국가건축정책 수립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다. 최소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통계자료는 확보되어 국민들에게 제공되어야 하며 이러한 자료는

모든 건축정책을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되어야 한다.

- 기존 건축물의 지역별, 용도별, 구조별, 규모별 현황자료
- 건축물의 유지관리 실태현황(건축물의 에너지 관리 포함)
- 신축되는 건축물의 지역별, 용도별, 구조별, 규모별 년, 월간 현황자료
- 신축되는 건축물의 지역별, 용도별 허가 및 신고현황
- 신축되는 건축물의 공사, 설계 및 감리 발주금액
- 신축되는 건축물의 공사, 설계 및 감리 발주방법
- 활동 중인 건축 관련업체의 관리현황(숫자, 매출규모, 기술인력 규모 등)

이를 위하여 통계청에 또는 국토해양부내에 건축통계과가 신설되어 국가건축기본정책의 기초자료 확보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2-3 민간전문가 활용

건축기본법 제23조에는 민간전문가가 건축관련 민원, 설계공모,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을 위하여 민간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열어놓았다. 공무원이 잘 할 수 있는 업무는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실무경험이 풍부하고 논리적인 민간전문가가 필요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권한과 그에 맞는 책임을 지게 하여 효율적인 건축이 되도록 해야 한다. 건축사와 기술사의 공무원 특채를 비롯하여 공공건축사 제도를 도입하는 등 민간전문가의 활용이 활성화되도록 제도적 환경변화를 이루어야 한다.

3. 건축인력관리 System

건축인력은 국가자격증을 가진 건축사, 기술사, 기사로 대별된다. 또한 건축인이 되고자 공부하는 학생과 그들을 가르치는 교수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인력들의 현황에 대한 확실한 관리기능은 없다. 건축사를 예로 들면 자격번호가 17045번 까지 나간 것은 확인이 되지만 그들 중 몇 명이 사망하였고 몇 명이 건축사사무소를 개업하고 있으며 몇 명이 교수 또는 공무원이나 건설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FTA를 대비하여 국제기준의 건축사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설립한 5년제 건축대학의 숫자와 학생 숫자에 대하여도 건축계와 정부는 한 번도 합의과정을 거친 적이 없다. 변호사 양성을 위한 LAW SCHOOL의 학생 수와 학교의 결정을 위하여 온 국민이 관심을 갖고 연일 토론하며 결론을 내던 모습과는 너무 대조적이다.

다음 표는 우리나라 전문대, 대학, 대학원의 학생(예비 건축인력) 현황이다. 전문대생 24,000여명, 대학생 50,000여명, 석박사과정 5,000여명 등 약 80,000여명이

건축관련학을 이수중이며 매년 12,000여명의 전문인력 배출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표1. 건축관련학과 학생현황

	학과수(개)	재학생수(명)	졸업생수(명)
2~3년제 대학 [건축・설비, 조경]	242	24,147	5,026
4~5년제 대학교 [건축·설비공, 건축학, 조경]	317	49,934	6,579
대학원 [건축·설비공, 건축학, 조경]	313 (석사224,박사89)	5,056	1,597

출처 : 한국교육개발원 (2009년 교육통계)

과연 이같이 많은 전문인력 배출이 적당한 것인지의 고민을 누가 해야 할 것인가? 향후 10년 이후의 건축인력 예상인원의 추계는 있는 것인가? 부족하거나 과할 경우에 그 대비책은 있는 것인지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다.

건축인력은 국가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해마다 통계적으로 나오는 국가전체 건축 작업량과 건축 기술인력 배출인원과의 역학관계를 짚어보고 전문인력들이 해당 업무로의 취업현황을 파악하여 전문 인력의 과다, 과소의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기준치를 국민에게 알리고 판단하게 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다.

4. 건축관련 업무실적관리 System

우리나라의 업무실적관리는 건설의 경우를 그대로 적용하여 법인의 실적만을 인정한다. 아무리 능력과 경험이 풍부한 기술인력을 채용하여 감리회사를 설립하거나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여도 감리용역의 입찰 참여는 물론 턴키공사나 현상공모전 설계에 참여할 수가 없다. PQ라는 명목으로 입찰에 참가할 자격기준에서 신설회사들은 회사실적이 없으므로 참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국가에서 기득권자의 권리를 그대로 유지시켜주겠다는 정책으로 오해받기 쉬우며 자유경쟁을 통한 경쟁력 강화라는 국가의 기본 방향과도 동떨어진 정책이다.

건설공사와 달리 설계와 감리는 회사의 능력보다는 그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사람들의 능력이 우선이다. 회사의 실적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책임지고 담당하는 사람의 실적과 경험이 중요하다. 회사의 실적을 PQ로 적용한다는 이야기는 국가에서 사람이 아닌 회사만을 키우겠다는 결론이다. 그러나 창조 산업은 한 두 사람의 아이디어와 창작력이 바로 경쟁력이다.

회사의 실적이 우선시되는 업종도 필요하겠지만 개인의 실적이 절대적인 업종에 대해서는 그에 맞는 실적관리제도가 필요하다. 따라서 PQ제도는 업무의 종류에 따라 회사, 개인 또는 회사+개인의 실적과 경험을 바탕으로 변경시키는 것이 해당업종의 경쟁력 강화에 유리하다.

국가의 필요에 따라 또는 업종의 특성에 따라 회사도 키우고 사람도 키울 수 있는 실적관리제도와 PQ제도의 원론적인 정책변화가 있어야 한다. 특히 건축설계분야에 있어서는 회사실적이 아닌 건축사 개인의 실적이 존중되어야 한다. 그래야 건축의 경쟁력이 살아나고 다양한 건축문화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5. 대국민 홍보 및 교육

건축은 전문분야인가? 아니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업무인가? 어느 분야이던 일반국민들이 할 수 있는 정도는 있지만 건축에서는 국민편의라는 명분으로 너무 많은 부분을 일반화되도록 방치하였다. 이는 건축의 전문성을 훼손시키며 국민들에게 건축디자인과 공사관리의 중요성을 간과하게 하는 국민의식과 우리나라의 잘못된 건축문화를 생성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 되었다.

그 원인의 주역은 바로 건축법과 건설산업기본법이다.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건축법에서는 설계의 많은 부분을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이 설계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감리는 모든 신고건축물에 대하여 아예 생략하였으며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일정규모 이하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하여 건설회사가 아닌 일반인도 건설이 가능하게 만들었다.

표2. 건축분야 전문가의 업무범위 제외범위

법 / 분야	건축법, 건설산업기본법의 내용 중 일반인이 할 수 있는 범위
설계	**건축법 제23조(건축물의 설계)**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미만인 증축·개축 또는 재축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층수가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3. 그 밖에 건축물의 특수성과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건축법시행령 제18조)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등 - 건축법시행령 제18조(설계도서의 작성) · 읍·면지역에서 건축하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창고 및 농막 · 읍·면지역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인 축사 및 작물 재배사 · 가설건축물
감리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 **건축법시행령 제11조(건축신고), 동법 제19조(공사감리)**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한다. 3.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4.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 5.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시행령 제11조(건축신고) -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 건축물의 높이를 3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건축조례 정하는) -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2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합계 500제곱미터 이하인 공장 - 읍·면지역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창고 및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작물재배사
공사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조립식 건축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은 건설업자가 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연면적이 66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 2. 연면적이 661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로서 공동주택인 건축물 3. 연면적이 49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외의 건축물 4. 3호의 건축물로서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

국민의 편의를 위한다는 표2의 전문가 예외규정은 오히려 국민들에게 더 큰 피해를 주고 있다. 실제로 어느 국민도 설계를 할 수도 없으며 공사를 할 수도 없다. 그러다보니 전문가가 아닌 전문가 흉내를 내는 이들에게 업무를 맡기게 되고 이는 평생에 한 번 할까 말까하는 자신의 건축물을 엉망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국민들이 그 피해사실조차 모르고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전문가의 일은 전문가에게 맡겨야 한다. 이러한 내용들은 대국민 교육이나 홍보를 통해서만 해결된다.

그러나 이미 잘못된 국민들의 건축에 대한 의식은 갑자기 바뀌지 않는다. 초 중 고등학교의 일반 교육 속에 별도의 건축교육에 대한 과정이 포함되어야 하며 그에 따르는 교재개발도 해야 한다. 건축의 날과 같은 건축만의 축제의 날은 국민들과 함께 건축을 되새길 수 있는 홍보기획이 있어야 한다.

올바른 건축은 국민과 국가의 위상을 올리며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임을 인식시켜야 한다.

6. 시급한 제도개선 Items

위에서 언급한 원론적인 정책제안들과 더불어 건축계의 숙제처럼 생각하고 있는 제도개선 요구내용들이 있다. 이에 건축계의 숙제로 생각되는 내용들을 아래에 개론적으로 열거하여 그 내용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 내용들의 문제점들이 단번에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건축계의 숙원임을 정부와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인식하여 한 가지씩이라도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1) 설계 발주제도

민간의 발주제도는 대부분 개인적인 소개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하거나 현상공모를 통하여 하는 경우가 많지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건축설계 발주는 일괄입찰방식인 턴키, 현상공모 및 BTL 방식과 입찰로 이루어지며 소규모의 경우는 수의계약으로 처리하고 있다. 이런 다양한 발주방법은 건축물의 용도, 규모, 완성시기의 긴급성 등에 따라 발주방법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특성에 맞추어 발주하여야 하지만 단지 발주방법이 편하다는 이유만으로 턴키나 BTL 방식과 입찰로 처리하는 것이 공공기관의 일반적인 발주흐름이다. 그러나 건축물의 설계발주방법은 건축기본법 제24조에도 선언하였듯이 현상공모전이 주류를 이루어야 한다. 다음에 기술한 내용들은 현재발주하고 있는 내용들에서 수정보완을 했으면 하는 건축계의 요청을 약술한 것이다.

가. 일괄입찰(턴키)

① 일정 공사금액 이상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토목공사가 아닌 건축물일 경우에는

- 긴급성을 요하여 발주기간을 최소화해야 할 때,
- 특수공법이나 기술이 필요하여 설계자와 건설사의 긴밀한 협조체제가 필요할 때,
- 국가의 기밀을 요하는 중요한 건축물로서 국가가 필요로 할 때

등의 특수조건이 아니라면 턴키발주로 해서는 안 될 것이다.

② 입찰 점수 배점에서 설계점수로 결정되도록 설계점수의 배점을 최대로 해야 한다. 턴키공사일 경우 어차피 정해진 공사기간과 공사금액 범위내에서 입찰하는 것이므로 공사금액으로 입찰자가 결정되면 결코 명품건축물의 탄생은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

나. 현상공모

① 현상설계의 최대 문제점인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위하여

- 심사위원의 공개,
- 심사내용의 공개와 토론

- 심사위원 중 전기, 구조, 설비, 조경 등의 평가는 적격성 여부만 확인하고 건축계획 전문가들로만 구성되는 평가위원 재편성의 필요성

② 과도한 제출 서류의 제한 및 약식 도서만으로의 평가 활성화가 필요하다. 일정규모 이상만 모형제출토록하고 형식적인 설계설명서는 최소화 하며 소규모 건축물은 배치, 평면, 입면 단면 등 캐드 도면만 제출하도록 하여 현상설계 참여자의 부담을 최소화 해 주어야 한다.

② 설계규모에 따른 현상설계 참가 등급제를 실시하여 규모별 경쟁체제를 만들어 국내 설계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신인 건축사의 업무영역을 확보해 주어 일정 업무만이라도 신인 건축사들이 설계업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다. BTL 방식

① BTL 방식은 민간투자를 유도하여 20년 동안 투자금액을 회수하는 방식이므로 발주청의 욕심이나 정치적인 목적에 의하여 20년의 건축공사 발주분이 한꺼번에 발주되는 우를 범하지 말게 해야 한다. BTL발주를 해야 하는지의 여부를 가리기 위한 부처별 중앙심의위원회를 활성화 시켜야 하며 해당 부처의 거수기가 아닌 실질 적인 심사를 하는 권위있는 위원회로 발전시켜야 한다.

② BTL 방식은 턴키방식과 같이 건설회사가 중심이 되어 팀을 구성하여 수주작전을 벌인다. 규모는 100억원 미만으로부터 10배 이상 되는 대규모 공사도 있다. 그래서 턴키와 같이 설계내용보다는 경제성, 유지관리 등의 부수적인 내용의 점수가 수주의 결정적인 역할로 작용하고 있다. BTL 방식으로 발주되는 주요 건축물들은 체육관, 박물관, 문예회관, 도서관, 학교 등으로서 예술성이 강조되어 먼 훗날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워야 할 그런 건축물들이다. 현재와 같이 이대로 설계내용보다 경제성을 위주로 BTL 방식이 진행된다면 우리나라의 공공건축물 중에는 절대적으로 명품건축물이 나올 수 없다. BTL 방식은 반드시 현상공모에서 작품을 선정하고 선정된 작품의 계획도면을 배부하여 V.E(Value Engineering)을 적용하여야 V.E제안의 차별과 공사비 차별의 장단점을 분석하여 제대로 된 BTL참여자의 옥석을 가릴 수 있을 것이다.

라. 입찰

설계발주를 위한 입찰제도는 현재 설계비 2억원 미만의 공사에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발주담당자의 무지로 인하여

- 기본도면이 전혀 없이 최소한의 스페이스 프로그램만 제공하고 그것이 바로 기본도면이라고 우기며 기본도면의 설계비를 빼는 경우,

- 중간설계는 실시설계의 과정이며 중간설계 없이는 실시설계로 진행할 수 없는 것인데도 중간설계는 납품받지 않겠다며 중간설계 비용을 빼는 경우
- 공사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공사비를 기준으로 설계비를 책정해 놓고 실제 공사비로 공사비가 인상되었는데도 설계비는 인상시켜주지 않겠다는 억지스러운 경우
- 전기를 건축과 통합하여 입찰함으로 인하여 건축사사무소에 비하여 턱없이 부족한 전기엔지니어링 회사를 붙잡기 위하여 전기회사가 요청한 용역비의 과다한 입찰조건을 수용하거나 입찰을 위한 참가수당을 지급하는 등 부작용들이 심각하나 전기와의 통합입찰을 발주자의 편의만을 고려하여 유지하고 있는 경우

들과 같은 부당한 경우가 전국적으로 자행되고 있으므로 입찰담당자의 무지와 예산절감을 위한 과도한 욕심으로 인한 이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건축설계 입찰을 위한 자세한 입찰매뉴얼이 작성되어 배부되어야 한다.

2) PQ제도

① 업무수주를 받으려고 하는 업체에 대한 적격심사인 PQ제도를 설계발주에 적용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틀을 바꾸어야 한다. 즉 창작물인 현상공모전에도 비슷한 실적을 필요로 하는 PQ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관행이다. 계획설계와 달리 실시설계가 염려되어 비슷한 실적이 필요하다면 계획안에 당선된 자가 실시설계를 위한 PQ를 갖추도록만 하면 될 것이다. 본인이 능력이 되면 그 내용을 검증하면 될 것이며 실적, 인력 등의 PQ가 부족하면 해당되는 업체와 연계하여 컨소시엄을 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아이디어를 가름하는 계획설계안마저 참석을 못하게 한다면 이는 창작의 개념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정책으로 평가될 것이다.

② 건축설계와 감리 분야는 회사실적이 아닌 개인 실적관리가 우선되어야 한다. 건설과 같이 시스템과 자본이 필요한 경우는 회사의 실적이 우선되겠지만 설계와 감리는 개인의 능력이 우선이다.

3) 건축물 유지관리제도 도입

건축기본법은 제5조 국민의 의무에서 “건축물의 소유자와 관리자는 건축의 공공적가치가 올바르게 구현되도록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유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선언하고 있다. 건축물은 건축물의 사용승인 이후부터 소멸되기까지

친환경성능의 유지관리와 디자인 보전 및 기능적 요소, 안전 등에 대한 관리방법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행법은 상징적인 관리의 의무만 있을 뿐이며 구체적인 관리방법이 없다. 건축물관리의 체계화는 기존 건축물들이 품격있고 지속가능한 긴 수명을 확보하여 건축물의 공공성과 건축문화를 보존하고 국민의 안전과 재산보호 및 국가경제에 기여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건축물관리법의 제정이나 건축법의 개정을 통하는 등 법률로 상정하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4) 건축 인허가제도

① 원칙적으로 모든 건축물의 설계는 전문가인 건축사에 의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규제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시작된, 일반인들이 직접 설계할 수 있는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의 범위확대는 결국 국민들에게 부실도면에 의한 부실공사와 분쟁으로 이어지게 된다. 국민을 위한다는 명분이 오히려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건축신고범위 확대는 국민들의 공사과정에서의 더 큰 피해방지를 위해서도 최소화로 환원되어야 한다.

② 건축허가는 종합민원실설치, 전자민원접수의 활용 등으로 예전에 비하여 훨씬 효율적이고 속도감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건축허가보다 더 많은 민원신청 건수를 기록하고 있는 건축신고에 대하여는 건축허가보다 더 빠르고 간편하게 처리해 준다는 법률적 목표와는 달리 진행되고 있다. 건축허가에서는 건축사에 의한 전자민원처리로 인하여 일괄 처리되고 있지만 건축신고는 건축사에 의한 전자민원처리에 의한 일괄 처리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③ 건축허가를 위한 각종심의제도는 일괄심의로 변경되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또한 만장일치로 유도되는 현행 의결방법은 최소한 2/3이상의 찬성으로 바꾸는 등의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아울러 각종 심의위원들의 월권적 심의범위도 없어져야 한다. 심의는 허가권자를 위한 자문성격이다. 초법적인 권한 행사로 이어져서는 절대 안 될 것이다.

5) 건축사 보수대가기준

① 건축기본법 제5조제2항은 “건축주 및 발주자는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의하여 설계자와 시공자를 선정하고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선언하였다. 공공기관의 설계대가는 건축사업무보수기준에 따라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지만 선진국의 공사비 8%정도에는 많이 못 미치는 것도 사실이다. 공사비 500억원 이상의

경우 BIM설계를 요청하면서도 그 대가는 생각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BIM설계를 위하여 걱종 설계자료의 데이터화 등의 준비작업이 덜된 상태에서의 발주시 BIM설계 요청은 속도를 늦춰야 한다.

② 민간부분의 설계비 현황은 처참할 정도이다. 필자의 기억으로는 20년 전에도 지금의 설계비 보다는 더 받았던 것으로 기억된다. 설계비의 덤핑은 더 큰 덤핑을 낳고 덤핑은 부실설계를 가져온다. 부실설계는 공사의 부실로 이어지고 분쟁을 야기 시키며 건축사들의 사회신뢰도와 인식도를 낮추게 된다. 이는 건축교육에도 영향을 주어 우수한 학생유치 어려움 등의 총체적이고 기본적인 문제로 환류하게 된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③ 설계 감리의 덤핑으로 인한 공사의 부실은 국민의 피해로 연결된다. 정부는 최소한 덤핑으로 인한 국민피해 방지의 대안으로 덤핑금액의 기준설정을 하여 공시하고 그를 어기는 당사자에게는 덤핑으로 인한 부실설계와 감리가 되지 않는지의 여부를 감독하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6) 공공건축사제도

건축기본법 제23조와 시행령 제21조에는 민간전문가를 법률적으로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건축전문 인력의 부족을 채울 수 있는 공공건축사 제도의 활성화를 제안한다. 실제 민간전문가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하여는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확보는 전년도의 계획에 따라 준비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홍보 및 협조요청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7) 5년제 건축대학 정원조절

지금까지 파악된 건축학과 5년제 학교의 수는 78개 학교이다. 1개 학교의 학생수를 최소40명으로 추정하여도 년간 약 3,000명 정도의 졸업생이 예상된다. 해마다 건축사에 합격되는 숫자가 300~500명 정도인 점을 고려하면 너무 많은 졸업생이 양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000명 정도의 졸업생이 모두 합격해도 건축사의 과잉 배출로 문제이고 너무 적은 인원이 합격해도 시험출제 탓이나 교육의 탓으로 사회문제가 될 수 있다. 서언에 표현 한 바와 같이 건축정책에서 건축사문제는 주요 핵심사항일 수밖에 없다. 5년제 건축대학의 정원조절은 국가정책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8) 친환경건축 설계와 시공을 위한 MANUAL 연구, 제작, 보급

지금 세계의 건축은 친환경과 에너지절약이 화두를 이루고 있다. 우리나라의 친환경정책은 2008년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주요 국가정책의 일환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연구기관의 활발한 연구와 실무진의 노력으로 친환경 기법의 필요성과 성과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설계와 시공을 하는 입장에서 실무에 적용할 자료는 찾아보기 힘들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그 내용들이 자신의 밥줄인양 생각하여 강의를 하면서도 자료는 주지 않는 현실이다.

에너지 절약을 위한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관한 연구가 있지만 그냥 계산에 의한 강의용일 뿐이다. 시공방법이나 디테일 적용에 의한 감소계수조차 고려하지 않은 초보적인 수준일 뿐이다. 설계에서의 각종 친환경 상세도, 친환경 건축재료적용, 친환경 제료와 설계에 대한 시공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를 통하여 MANUAL을 만들고 보급해야 한다. 친환경설계와 시공이 보편적인 지식으로 전달되어 우리나라의 모든 건축물의 설계와 시공이 친환경적으로, 에너지 절약적으로 보편화 되어야 한다.

이는 민간차원의 일이 아니다. 국가가 나서서 연구하고 발표하고 보급하면서 이끌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한 건축계 모두의 협력과 노력도 함께 해야 할 것이다.

9) 소규모 건축물의 공사를 위한 소형 건설업제도 도입

건축산업기본법 제41조에 언급된 건설업자가 하지 않아도 되는 소규모 건축물의 범위설정은 우리나라 건축문화를 말살시키는 주범중의 하나이다. 실제적인 건축공사책임자와 회사는 버젓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류에 나타난 대부분의 법률적 시공자는 건축주 자신이다. 공사 책임이 없으니 건축주에게 위법 시공을 권유하고설계내용과 다른 임의시공을 권유한다. 건축주는 자신에게 경제적으로 유리하다는 판단으로 묵인하며 전국의 모든 건축주들을 위법자로 양산한다.

아무리 작은 공사라 할지라도 실제로 공사를 하는 사람이 잘못된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규모공사를 하는 사람의 실명화가 필요하다. 아예 소형건설업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문건설업 수준의 자본과 기술력을 확보하게 하고 다른 사업자들과 세금의 형평성도 맞추고 공사를 잘못한 경우에는 법률적인 책임도 지게 해야 한다.

원칙을 벗어난 규제개혁이나 예외규정은 항상 잘못된 대가를 치루게 되어 있다. 소형 건설업이 미루어진 대가는 이미 치룰만큼 치루었다고 판단된다. 이제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다. 무자격 건설업자의 위법시공으로부터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법률적 전과자가 되는 폐해로부터 보호해야 한다.